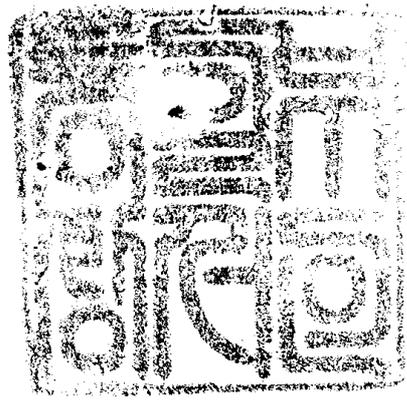


00-2-2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연구

331.138
3915



통 일 부

- 이 보고서는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비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시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99. 5. 1부터 '99. 8. 31까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위촉하여 수행한 결과입니다.
- 따라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용역팀의 견해로 당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머 리 말

북한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수년간 계속된 수해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년에만 해도 8월 현재까지 6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는 단순히 현재 남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온 남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될 사회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990여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통일준비작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한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는 것이 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직업생활을 통해 삶에서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직업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민간 등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요망된다.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남한자격 인정을 통해 자격 관련 분야의 직업능력 향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 경력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급여의 현실화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회사

내의 승진 또는 승급과 연계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여 개인, 회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사고방식과 근로 형태로부터 벗어나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적응하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통해 북한의 자격체제와 개별 자격의 종목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서독의 구동독 학력·자격·경력 인정 사례와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자격 인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자격·경력 인정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의 인정 방안 및 인정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될 자격과 경력 인정 정책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염원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통일부 관련부처 관계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기타 연구 자료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 연구 요약 】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남한사회에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의 자격체제

북한의 자격은 크게 기사, 준기사, 기능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것은 응시자의 자격응시 요건 중 최소학력요건의 고려를 통해 구분되어진다. 기사, 준기사, 기능은 여러 단계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는 6~1급의 나누어져 있으나 종목에 따라 3~1급, 5~1급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의 자격급수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급수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자격의 경우는 단일 급수로 되어 있다.

준기사 급수는 일반적으로 6~1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을 통해 나타난 준기사의 급수는 주로 단일급, 3~1급, 4~1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능 자격은 기사, 준기사 자격보다 더욱 급수가 세분화되어 최대 1~8급 까지 나누어져 있으나 자격의 수준은 기사, 준기사 자격과 같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종목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자격은 검정방식으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시험은 특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작업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대체로 실제 작업을 통해 자격응시자의 현장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능자격에 있어서는 필기보다 실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고급 등급의 자격시험은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게 간주하여 전

체시험에서 이론의 수준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남북한 자격체제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준기사나 기사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모든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법률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자격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학력요건을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을 비교하면 남한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은 없지만 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 북한의 학력·자격·경력 인정 실태분석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제법률을 통해서 남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남한에서 동일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시험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들어온 직후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력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때 남한주민의 이력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의 인정을 위한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구서독은 구동독의 학력·자격을 그대로 인정, 구서독에서 취득한 학력·자격과 동등하게 대우했다. 즉, 구서독과 구동독 간에 맺어진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학력이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신연방주에서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았다. 대체로 독일은 자격과 학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인정방법에 관한 법적 규정을 통해 구동독의 자격과 학력을 인정하였다.

□ 북한자격 인정방안

남북한자격을 연계 방법으로 ① 응시자격 조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북한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 ② 남한의 기술사 자격은 인정자격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해당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③ 남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하여 북한자격을 인정, ④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은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시 취득하는 등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자격의 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으로 인정, ⑤ 8단계 이상의 기능급수가 있는 북한 기능자격의 최고위 등급(7~8급)에 한하여 남한 기능장 자격으로 인정, ⑥ 단일급수의 기사, 준기사를 제외한 무급 자격은 남한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 등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 ⑦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인정은 북한자격의 응시자격과 검정내용의 비교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②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

격을 인정하는 방법, ③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방안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은 일정 기간의 자격관련 교육훈련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내용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시된 자격과 관련된 모든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받은 북한의 자격은 자격인정 후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같은 법정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이수도 가능할 것이다.

제 3 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기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1999.6.15. 개정 예규 제425호)」의 제14조 ‘훈련기준의 내용’과 제 16조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자격종목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경력 인정방안

북한에서의 직장경력을 남한의 경력으로 인정할 때에는 입직 초기부터 최대 2년간(취업보호기간)의 경력 환산방법과 그 이후의 경력 환산방법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취업보호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경력인정 방법으로는 ①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근무 경력의 50%를 인정, ②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보호기간 동안은 북한근무 경력의 20%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남한 기업은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전 직장경력 50%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취업보호 기간 동안의 경력인정은 위에서 제시한 수준이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은 입직 초기부터 이들의 계속 고용여부를 평

가하는 시점까지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참여실적, 컴퓨터 활용능력과 영어능력 등과 같은 기초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북한취득 경력을 재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력인정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취업보호기간 동안에 실시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미리 이들의 취업처인 기업, 단체, 또는 정부 부처 등에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의 추진을 제안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관장하는 기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정·관리하기 위해서 경력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설치·운영한다.
3. 취업보호기간 종료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제공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기초 및 전문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경력환산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

차 례

【연구 요약】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 | 3 |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5 |
| II.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 | 7 |
|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7 |
| 2.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절차 | 9 |
| 3. 최종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 | 15 |
| 4.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 20 |
| III. 남북한의 자격체제 | 23 |
| 1. 남한의 자격체제 | 23 |
| 2. 북한의 자격체제 | 29 |
| 3.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 38 |
| IV. 북한취득 학력·자격·경력의 남한인정 실태 | 41 |
| 1. 북한취득 학력의 인정 실태 | 41 |
| 2.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 실태 | 48 |
| 3. 북한취득 경력의 인정 실태 | 53 |
| 4. 구서독의 구동독 학력·자격·경력 인정사례 | 54 |

| | |
|--|------------|
| 5. 시사점 | 56 |
| V.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 57 |
| 1. 기본방향 | 57 |
| 2. 자격인정방안 | 58 |
| 3. 경력인정방안 | 71 |
| VI. 요약 및 정책 제언 | 77 |
| 1. 요약 | 77 |
| 2. 정책 제언 | 83 |
| 참고문헌 | 93 |
| [부록 1] 면담지 | 97 |
| [부록 2]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 시나리오 | 103 |
| [부록 3]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및 그 외의 국가자격(38종목) | 107 |

표 차 례

| | |
|---|----|
| <표 II- 1>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 7 |
| <표 II-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 | 8 |
| <표 II- 3>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연령분포 현황 | 9 |
| <표 II- 4>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탈북 연도별 분포 현황 | 10 |
| <표 II- 5>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학력분포 현황 | 11 |
| <표 II- 6>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직업분포 현황 | 12 |
| <표 II- 7> 면담대상에서 제외된 자격분야 | 13 |
| <표 II- 8>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 | 16 |
| <표 II- 9>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분포 | 16 |
| <표 II-10>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취득 분야 | 17 |
| <표 II-11>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 | 18 |
| <표 II-12>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직장경력기간 | 19 |
| <표 II-13>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직업분포 현황 | 19 |
| <표 III- 1>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결정 기준 | 25 |
| <표 III- 2>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직종 수 | 26 |
| <표 III- 3>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을 응시자격 중 학력요건 | 27 |
| <표 III- 4> 자격시험의 유무 | 28 |
| <표 III- 5> 자격등급의 유무 | 28 |
| <표 III- 6> 면담에서 나타난 북한 자격의 종류 및 급수 | 30 |
| <표 IV- 1> 남북한 교육시간 비교 | 44 |
| <표 V- 1> 남한 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북한자격의 등급 | 60 |
| <표 V- 2> 북한 자격의 인정 가능한 자격종목 및 등급 | 61 |
| <표 V- 3>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과 북한자격의 비교 | 64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 1]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 절차 | 15 |
| [그림 III- 1]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체제 | 24 |
| [그림 III- 2] 북한의 학력에 따른 자격체제도 | 32 |
| [그림 III- 3]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기능·기술분야) | 39 |
| [그림 IV- 1] 남북한의 학제비교 | 43 |
| [그림 IV- 2]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절차 | 47 |
| [그림 IV- 3]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절차 | 50 |
| [그림 IV- 4]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 절차 | 53 |
| [그림 V- 1]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절차 및 내용 | 69 |
| [그림 V- 2]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 절차 및 내용 | 74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 현상은 1990년 초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990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360여명이 1990년 이후 귀순한 사람들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수해로 인한 식량난에 기인한 북한주민의 탈북 현상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북한에서의 사회적, 직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인이나 기타 특수계층의 북한이탈주민이 주류를 이루었던 70~80년대와 달리 1980년대 이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별목공, 유학생 등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9년 이전까지 귀순한 607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40%(244명)가 군인 출신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은 92% 가량이 민간인 출신이다. 이와 함께 그들의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졌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20~40대의 연령층이 76%(767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주민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 이상의 것이다. 남한사회 내에 사회적, 지역적 기반이 부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간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직업은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된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곧 남한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부분이다(강구섭, 1998).

그러나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소수만이 원활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알선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무직 상태에 있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극히 불안정한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 경우도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 실무 능력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직장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김영수, 1996).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정규직 보다 임시직, 계약직 등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성의 저하 등의 이유로 직무가 주어지지 않는 등 잉여인력을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부족,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그릇된 인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력의 측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력이 급여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에서 경력의 불인정으로 인해 이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 직업알선, 사회적응교육 등은 대단히 미미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경력 인정 또한 아직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착시설을 건립하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종합적인 사회적응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김중태, 199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계속되는 유입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즉, 북한의 자격체계와 종목을 남한의 자격체제 및 종목과 비교·연구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개별 자격 및 경력의 인정시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며, 또한 통일 이후 북한의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가. 관련문헌 및 자료분석

먼저 북한 자격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자격제도, 교육제도,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북한의 자격체계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현황, 직업생활 현황,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에 대한 문헌 및 자료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서독의 동독 주민의 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독일의 사례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 남한의 자격체계와 자격의 구체적 종목에 대해 파악하였다.

나. 관련인사 면담

북한에서 취득한 개별 자격의 종류, 내용, 자격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자격체계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자격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

한 북한에서 현지주민을 고용하여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 기술 담당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기술, 기능, 지식 등 실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1) 면담지 내용

북한의 자격종류, 자격내용, 자격체계 등 자격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미리 작성된 면담지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성된 면담지의 면담문항 구성 및 배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면담지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면담대상자에 대한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면담지를 수정·보완하여 면담내용을 확정하였다. 면담지는 [부록 1]에서 제시하였다.

2) 면담일시 및 방법

1999년 6월 7일부터 1999년 7월 26일까지 총 32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방법은 우선 전화를 통해 북한자격소지자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로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상담실을 사용하였으며, 면담대상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나 본 연구원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면담방법은 우선 면담대상자에게 면담지를 제시하여 면담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취지를 이해한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면담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 전문가 협의회

1999년 5월,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고 면담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통일

부 관계관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 학교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세부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이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의 인정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1차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연구 범위는 첫째, 이 연구 결과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는 시간적 범위는 통일 전 단계로 한정된다. 이후의 통일의 과도기·통일 후의 방안은 차후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 거주하거나 남한에 거주하다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는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의 대상은 1970년~1998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0년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자격소지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충분한 문헌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북한의 자격체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1차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자료의 빈곤으로 인해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된 방법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자료의 부족과 방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면담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 분야에 대해 가급적 2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면담대상자의 한정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자격체계가 현재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확한 자격체제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앞으로 남한에 거주하게 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가올 통일 사회의 국가 자격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

1. 북한이탈주민 현황

가.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수

1999년 6월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 인원은 997여명에 이른다(하나원, 1999).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 연령대 | ~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 | 총계 |
|-------|-----|-------|-------|-------|-------|-------|-----|-----|
| 인원(명) | 22 | 134 | 409 | 265 | 93 | 50 | 24 | 997 |
| 비율(%) | 2 | 13.6 | 41 | 26.5 | 9.5 | 5 | 2.4 | 100 |

연령별 분포에서 20~30대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6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가능인구라고 할 수 있는 20~40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76.8% 즉, 767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탈북 전 직업 분포현황

1948년 이후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 1990년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큰 차이를 보인다<표 II-2>.

<표 II-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

| 직업 | 1948년~1989년 | | | 1990년~1999년 | | |
|-----|-------------|------|---------------|-------------|------|---------------|
| | 인원 | 비율 | 비율 | 인원 | 비율 | 비율 |
| 군인 | 35명(장교) | 5.8 | 244명 40.2% | 10명(장교) | 2.6 | 28명 7.2% |
| | 209명(사병) | 34.4 | | 18명(사병) | 4.6 | |
| 관료 | 169 | 27.8 | 363명 59.8% | 58 | 14.8 | 362명 92.8% |
| 노동자 | 146 | 24.1 | | 184 | 47.6 | |
| 학생 | 32 | 3.6 | | 53 | 13.6 | |
| 기타 | 26 | 4.3 | | 67 | 17.8 | |

<표 II-2>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II-2>를 통해 1948년~1989년까지는 군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들어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92.8%로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식량난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 배경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절차

가.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특성

1) 연령

이 연구에서는 1970년~1998년까지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면담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면담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가급적 북한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을 위한 모집단의 연령 분포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연령분포 현황

| 연령대 | ~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 | 총 계 |
|------------|-----|-------|-------|-------|-------|-------|-----|-----|
| 인원수 (명) | 21 | 32 | 135 | 143 | 56 | 30 | 13 | 430 |
| 비율(%) | 4.9 | 7.5 | 31.2 | 33.2 | 13.1 | 7.1 | 3 | 100 |

<표 II-3>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체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40대가 전체 대상자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연령대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탈북 연도별 분포 현황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탈북 연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

연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작스럽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의 누적과 수년간 계속된 수해 등으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90년대 이후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면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 II-4>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탈북 연도별 분포 현황

| 년도 | 인원수 | 년도 | 인원수 | 년도 | 인원수 |
|------|-----|------|-----|------|-----|
| 1970 | 22 | 1980 | 7 | 1990 | 9 |
| 1971 | 10 | 1981 | 2 | 1991 | 9 |
| 1972 | 1 | 1982 | 5 | 1992 | 8 |
| 1973 | 1 | 1983 | 8 | 1993 | 8 |
| 1974 | 5 | 1984 | 1 | 1994 | 52 |
| 1975 | 4 | 1985 | 1 | 1995 | 40 |
| 1976 | 4 | 1986 | 3 | 1996 | 56 |
| 1977 | 3 | 1987 | 15 | 1997 | 86 |
| 1978 | 4 | 1988 | 5 | 1998 | 40 |
| 1979 | 5 | 1989 | 16 | 총계 | 430 |

3) 학력분포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학력분포 현황

| 학 력 | 무졸 | 국졸 | 중졸 | 고등중졸 | 전문대졸 | 대졸 | 원졸 | 기타 | 총 계 |
|--------|----|----|----|------|------|----|----|----|-----|
| 인원수(명) | 6 | 33 | 26 | 181 | 52 | 89 | 9 | 34 | 430 |
| 비율(%) | 1 | 7 | 6 | 42 | 12 | 20 | 2 | 8 | 100 |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출신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출신이 2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이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김동규, 1990). 또 대졸 출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에게 해외 방문 및 체류의 기회가 저학력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4) 탈북 전 직업분포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

탈북 전 직업분포를 보면 공업(광업) 분야에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후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한 북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연구소, 1994). 전체적으로 탈북 전의 직업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과 군인과 관료를 합한 수보다 민간인 출신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6>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직업분포 현황

| 직업분류 | 인원수(명) | 비율(%) | 비고 |
|-----------|--------|-------|--------|
| 군인 | 37 | 8.6 | 8.6 % |
| 관료 | 26 | 6 | 91.4 % |
| 교원(연구직포함) | 13 | 3 | |
| 의료 | 11 | 2.4 | |
| 상업 | 13 | 3 | |
| 공업(광업) | 111 | 25. | |
| 농수산업 | 37 | 9 | |
| 학생 | 67 | 15 | |
| 기타 | 115 | 26 | |
| 총계 | 430 명 | 100 % | |

나.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절차

1) 선정기준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인정된 자격 및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층이 두텁고, 인정할 자격 종류와 그 분야가 다양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70년~1998년까지 남한에 들어

은 북한이탈주민을 면담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얻기 위해 이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면담대상자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면담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한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을 참고하였다¹⁾.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자격과 근무경력이 일치하는 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면담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격별로 가급적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최근에 자격을 취득한 경력을 갖고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넷째, 남한자격과 연계 가능한 직종에 종사한 자를 선정하였다.

한편 몇몇 자격은 이미 내용이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거나 현 상황에는 자격의 인정이 곤란하다는 관계 기관 및 정부의 판단 하에 연구분야에서 제외하였다. 그러한 분야로 <표 II-7>과 같은 자격 종목이 있다.

<표 II-7> 면담대상에서 제외된 자격분야

| 자격명 | 제 외 사 유 |
|------|--|
| 운전수 | 자격의 내용이 이미 상세하게 파악되어 현재 도로교통법상 기능시험의 일부(코스)를 면제하고 있음 |
| 요리사 | 자격의 내용이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고 자격 인정 사례가 있음 |
| 의료분야 | 현 상황에서 자격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면담대상자에서 제외함 |
| 교 사 | 자격인정이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제외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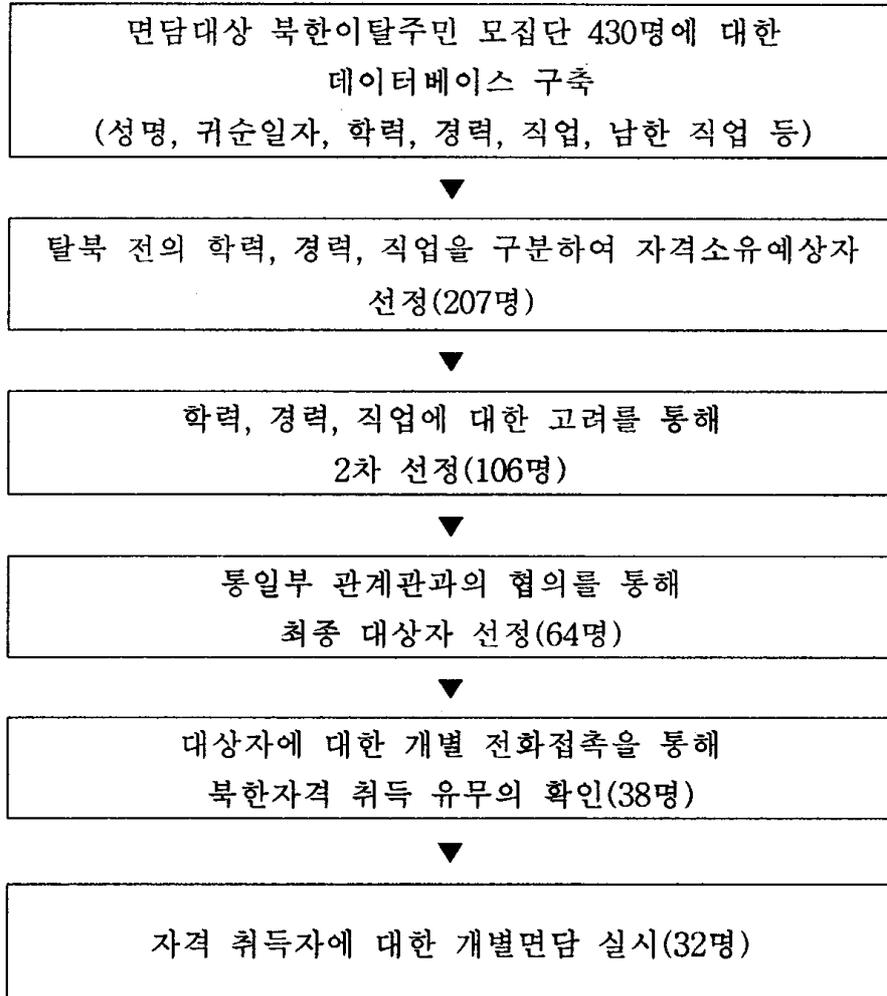
1)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에는 탈북자의 탈북일자, 탈북동기, 탈북경로, 가족사항, 탈북 전의 학력, 경력, 직업, 남한정착 후의 직업, 생활실태, 기타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정보원(1998),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 국가정보원.

2) 선정 절차

우선 위에서 언급한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을 바탕으로 1970년~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430여명을 대상으로 성명, 귀순일자, 학력, 경력, 자격, 직업, 남한경력 등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경력, 자격, 탈북 전 직업 등을 고려하여 1차로 207명의 면담대상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때에는 중복되는 직업이나 직업 내용이 불확실한 대상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에 탈북했을 경우라도 고령자이거나 북한에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대상자를 제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차 선정작업에서는 207명의 대상자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소지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0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때에는 1차로 선정된 207명 가운데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가급적 학력과 해당 근무직종이 동일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직종별 3~4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했다. 다음으로 1·2차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6명의 면담대상자를 토대로 통일부 관계관과 면담자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때에는 통일부 관계관이 갖고 있는 면담대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리라 판단되는 면담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64명의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였다. 최종 단계에서는 남한자격과 연계 가능한 북한자격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최종 면담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64명에 대한 개별 전화접촉을 통해 자격취득 유무를 확인했다. 개별 전화접촉 결과 총 64명 가운데 자격소유자는 총 38명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소지자 가운데 면담거부 의사를 밝힌 대상자(1명), 건강상 면담이 불가능한 자(1명), 남한에는 없는 특이자격자(2명), 연구대상 이외의 자격소유자(2명) 등 6명을 제외한 32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64명에서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무자격자(8명), 지방거주자(5명), 연락이 안되는 자(12명), 기타(1명) 등의 사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면담대상자 선정 절차를 보

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 절차

3. 최종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선정

모집단에 기초한 면담대상자 선정 작업을 통해 선정된 64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1차 전화접촉을 통해 자격소유자로 확인된 총 32명의 면담대상자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탈북 전 직업 등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연령분포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의 연령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8>.

<표 II-8>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

| 연령대 | 21~30 | 31~40 | 41~50 | 51~60 | 61~ | 총 계 |
|--------|-------|-------|-------|-------|-----|-----|
| 인원수(명) | 6 | 15 | 6 | 4 | 1 | 32 |
| 비율(%) | 18 | 47 | 20 | 12 | 3 | 100 |

나. 학력분포

<표 II-9>에서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분포는 고등중학교, 전문대, 대학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졸 학력소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표 II-5>의 면담대상자 모집단의 학력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북한자격체계의 특성상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하여 자격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학력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II-9>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분포

| 학 력 | 고등중졸 | 전문대졸 (기능공학교포함) | 대졸 | 기타 | 총계 |
|--------|------|-------------------|----|----|-----|
| 인원수(명) | 8 | 9 | 12 | 3 | 32 |
| 비율(%) | 25 | 28 | 37 | 9 | 100 |

다. 자격취득분야

자격취득분야를 살펴보면 <표 II-10>과 같이 총 12개 분야 37종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종목수가 증가된 이유는 한 명의 면담대상자가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면담대상자 가운데 5명이 한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취득 분야

| 자격분야 | 종목수 |
|------|-----|
| 전기 | 3 |
| 통신 | 2 |
| 건축 | 5 |
| 기계 | 5 |
| 농림 | 4 |
| 경제 | 4 |
| 토목 | 2 |
| 의료 | 1 |
| 금속 | 1 |
| 섬유 | 2 |
| 화공 | 1 |
| 기타 | 7 |
| 총계 | 37 |

라. 북한에서의 직업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을 보면 취득자격 분야와 직업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I-11>2).

2) 이는 해당 직종 분야를 구분 하는 과정에서의 통계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

<표 II-11>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전 직업분포 현황

| 종사분야 | 종사자 수 |
|------|-------|
| 전기 | 1 |
| 통신 | 1 |
| 건축 | 2 |
| 기계 | 9 |
| 농림 | 4 |
| 경제 | 2 |
| 토목 | 2 |
| 의료 | 1 |
| 금속 | 0 |
| 섬유 | 0 |
| 화공 | 0 |
| 기타 | 10 |
| 총계 | 32 |

마. 북한에서의 직장경력 기간³⁾

직장경력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6~10년, 11~1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분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표 II-12>.

이다. 예를 들어 기계 자격 소유자가 농업 부분의 기계 분야에서 종사하였을 경우 통계상으로는 농업 부분이 근무 분야로 선정된다.

- 3) 직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경력연한이 반드시 근무 분야나 해당 자격의 경력연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II-12>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직장경력기간

| 경력연한(년) | 1~5 | 6~10 | 11~15 | 16~20 | 21~ | 총계 |
|---------|------|------|-------|-------|-----|-----|
| 인원수(명) | 7 | 11 | 9 | 3 | 2 | 32 |
| 비율(%) | 21.8 | 34.2 | 28 | 10 | 6 | 100 |

바. 남한에서의 직업생활 실태

면담대상자의 남한에서의 직업생활 현황을 보면 대체로 일반 직장의 비율보다 사기업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13>. 그러나 남한에서 탈북 전에 근무했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표 II-13> 면담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직업분포 현황

| 직업유무 | 분 야 | 인원수 | 비 고 |
|------|--------|-----|-------------------|
| 유 | 사기업 | 4 | |
| | 공기업 | 3 | |
| | 자영업 | 7 | |
| | 연구관련기관 | 2 | |
| | 기 타 | 1 | |
| | 학 생 | 4 | |
| 무 | | 6 | |
| 기 타 | | 5 | 고령자, 건강이상자, 가사, 등 |
| 총 계 | | 32 | |

4.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격 및 경력의 인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선 그들은 남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체제와 산업수준의 차이에 따른 기술 및 능력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동일분야의 직업일지라도 기술 수준 및 장비, 설비, 통용되는 전문용어 등의 차이로 인해 자신들이 남한의 근로자들보다 지식, 기술, 기능 등의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컴퓨터 등의 일부 분야에서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였을 뿐, 지식의 이론적 수준에서는 남한의 고학력자들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직업교육훈련 없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의 자격으로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남한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인정받은 자격의 공신력이 떨어져 인정받은 자격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요구하는 자격 인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후 남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둘째, 해당분야에서 대한 교육훈련 이수 후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한다.

위의 인정 방법에서 교육훈련 이수 후 실기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영어, 한자 등의 용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필기시험을 실시하면 자격취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력의 인정 여부는 보수와 연결되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경력 인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격과 달리 경력의 인정에 있어서 이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현재 이들은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많은 경제적·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고, 통일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이 취업 시 받는 월급 액수와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경력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 인정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적으로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처음부터 100%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는 않았다. 우선 취업초기 1~2년 유예기간을 두고, 탈북 전 직업과 같은 동일분야인 경우 북한 경력을 약 70% 정도, 다른 분야인 경우 약 30%정도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직무에 적응한 후 남한직장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게 북한경력을 재평가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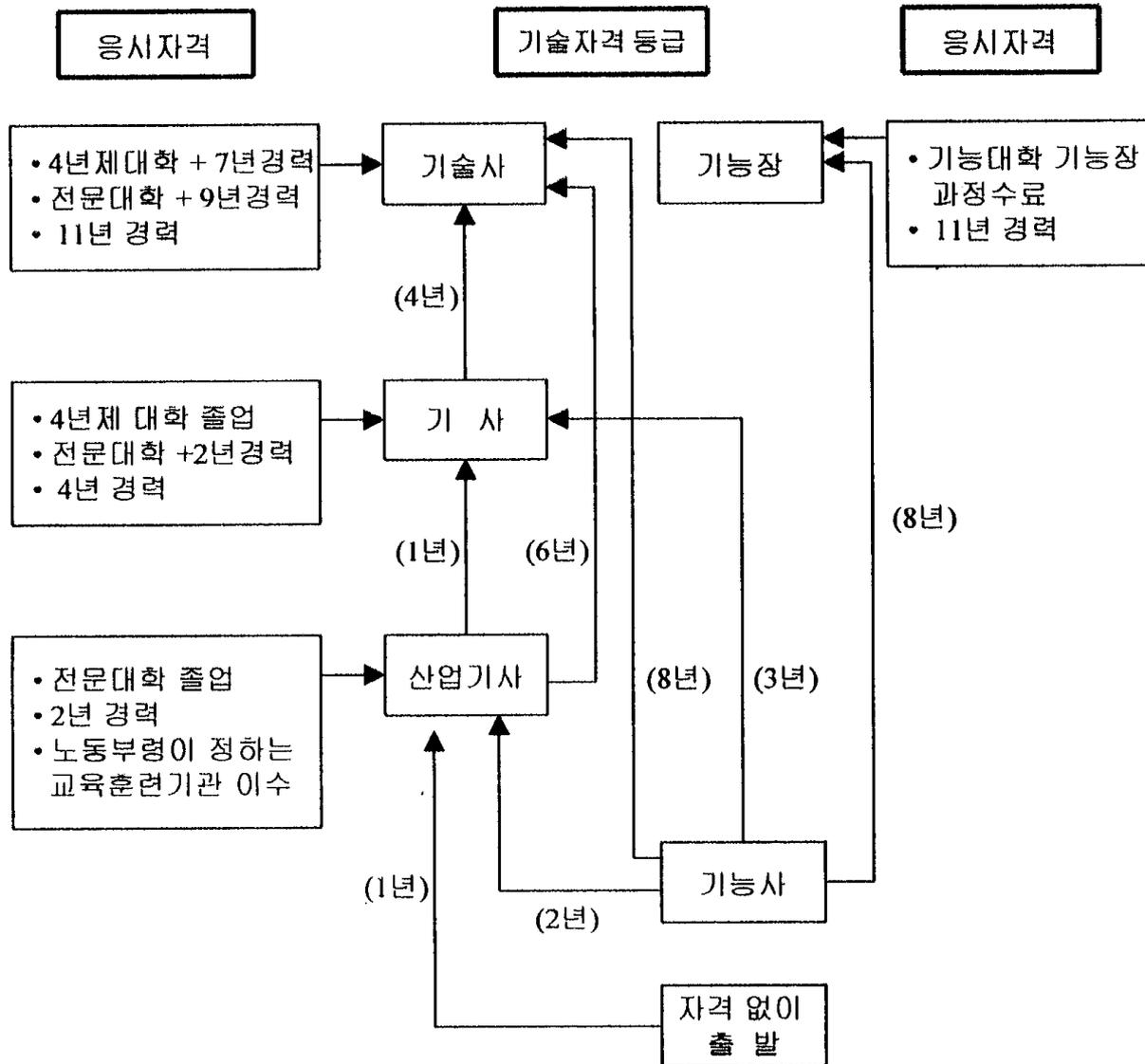
Ⅲ. 남북한의 자격체제

1. 남한의 자격체제

북한 자격을 남한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영역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직무영역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 남북한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자격의 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비교하여 북한 자격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자격간의 관계와 각 자격의 응시자격은 [그림 Ⅲ-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자격응시조건은 학력 요건과 실무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기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자격시험에는 학력과 무관하게 현장의 실무경력 조건만 충족되면 응시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즉, 최고등급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도 관련분야의 현장경력 11년 이상이면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 ()는 실무경력 연수

[그림 III-1]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체제

남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합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자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면접형, 작업형, 필답형, 복합형의 네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면접형은 기술사의 실기시험에서만 구술시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작업형은 주어진 도면 및 요

구사항 등을 직접 제작, 조작하여 이것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이다. 복합형은 작업형과 필답형(단답형 주관식 및 주관식 서술형)을 적절히 나누어 부과하는 유형의 시험이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이 복합형인 경우 작업형과 주관식 필기시험의 점수 비율은 자격 종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II-1>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III-1>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결정 기준

| 직무분야 | 등 급 | 필기시험 | 실기(면접시험) |
|--------------------|------------|---|--|
|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 기술사 |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구술형 면접시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 기능장 | - 객관식 4지 택일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 기사 산업기사 | -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 기능사 | - 객관식 4지 택일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을 직무분야별로 구분하여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료·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27개, 전문사무 24개 직종, 해양 분야 15개 직종 등 총 120개의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I-2>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직종 수

| 구 분 | 직 종 | 국 가 자 격 |
|---------|-----|--|
| 의료·보건 | 27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의사, 수의사 |
| 전문사무 | 24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경매사, 사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주조사, 행정사, 관세사, 보세사, 변리사, 품질경영진단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판매관리사 |
| 해양 | 15 | 검량사, 감정사, 검수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정사, 운항사, 위생관리자, 위험화학물적재선박승무원, 구명정수, 해기관리사, 해무사, 항해사, 통신사, 어업사 |
| 교육·사회복지 | 12 |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사회복지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직업훈련교사, 청소년지도사 |
| 항공 | 9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자가용조종사 |
| 에너지 | 7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
| 농림 | 5 | 농업사, 임업사, 가축인공수정사,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
| 서비스 | 5 | 전통식품명인,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안내원, 관광숙박업지배인,接客종사원, |
| 교통 | 4 | 교통안전관리자, 강사, 기능검정원, 운전면허 |
| 통신 | 3 | 아마추어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
| 안전관리 | 3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
| 공예 | 2 |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
| 산업응용 | 2 |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
| 건축 | 1 | 건축사 |
| 국토개발 | 1 | 환지사 |
| 계 | 120 | |

자료)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한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을 응시자격을 학력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표 III-3>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자격을 66%에 해당하는 79개 직종의 국가자격이 응시 조건상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자격들은 대학에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의 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시험에서 전공의 제한을 두고 있다.

<표 III-3>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을 응시자격 중 학력요건

| 구 분 | 직 종(%) | 국 가 자 격 |
|-----------|----------|--|
| ① 제한 없음 | 79(66) | 생 략 |
| ② 중졸 이상 | 1(1) | 안마사 |
| ③ 고졸 이상 | 22(18) | 간호조무사, 경기지도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교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청소년지도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한약업사, 사회복지사 |
| ④ 전문대졸 이상 | 8(7) | 간호사, 사서, 사서교사, 양호교사, 영양사, 정신보건간호사, 조산사, 안경사 |
| ⑤ 대졸 이상 | 10(8)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수의사, 약사, 의사, 전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치과 의사, 한약사, 한의사 |
| 계 | 120(100) | |

자료)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취득시 자격시험의 유무를 조사·정리하여 <표 III-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자격 중 자격시험이 없는 자격은 모두 20개 직종임을 알 수 있다. 자격시험이 없는 자격은 크게 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 취득하는 분야(사서,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와 법정 자격요건 해당자로서 서류심사나 해당 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하는 분야(농업사, 산림토목기술자, 안마

사, 영림기술자, 임업사, 어업사, 전통식품명인, 직업훈련교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구명정수, 위험화학물적재선박승무원)로 나눌 수 있다.

<표 III-4> 자격시험의 유무

| 구 분 | 직 종(%) | 국 가 자 격 |
|---------|----------|---|
| ① 시험 있음 | 100(83) | 생 략 |
| ② 시험 없음 | 20(17) | 정교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양호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원, 구명정수, 농업사, 임업사, 어업사, 전통식품명인, 사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영림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직업훈련교사 |
| 계 | 120(100) | |

자료)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의 등급 유무를 <표 III-5>에 제시하였다. 등급이 있는 국가자격은 전체의 25%인 30개 직종이다.

<표 III-5> 자격등급의 유무

| 구 분 | 직 종(%) | 국 가 자 격 |
|---------|----------|--|
| ① 등급 있음 | 30(25) | 경기지도자, 관광숙박업지배인, 기관사, 도선사, 사서,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산림토목기술자, 생활체육지도자, 아마추어무선기사, 양호교사, 영림기술자, 운전면허, 운항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정교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주조사, 직업훈련교사, 청소년지도사, 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판매사, 항해사 |
| ② 등급 없음 | 90(75) | 생 략 |
| 계 | 120(100) | |

자료)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북한의 자격체제

가. 북한의 자격종목

면담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자격종목은 <표 III-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3개종목이다⁴⁾. 북한의 자격은 북한당국의 직접관리하고 있으므로 <표 III-6>에서 제시한 자격은 모두 국가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국가자격은 크게 두 영역 즉,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과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예 : 변호사, 회계사, 교사, 의사, 간호사, 조사원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표 III-6>에 제시된 북한자격을 남한의 자격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표 III-6>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 북한의 자격에는 경제사, 문학사, 정치학, 반도체전문가 등 남한 사회에서는 생소한 자격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술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자격종목은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특히 기능분야는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업무영역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격취득자의 직무 특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무선수 자격은 자격소지자에 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남한과 동일하게 면허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남한의 열관리자격 및 보일러취급과 같은 열관리공은 남한과 달리 면허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4) <표 II-10>에서 확인된 자격종목 수와의 차이는 남한의 자격종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이자격을 비롯한 몇몇 자격을 자격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6> 면담에서 나타난 북한 자격의 종류 및 급수

| 구 분 | 북한자격 | | 해당분야 (남 한) | 비 고 |
|-----|---------------|-----------------|---------------|--------------------------|
| | 자격종목 | 급 수 | | |
| 기 능 | 목공기능공* | 5~1급 | 건축 | |
| | 미장기능공* | 4~1급 | 건축 | |
| | 불도저* | 4~1급 | 기계 | |
| | 사 진* | 5~1급 | 산업응용 | |
| | 열관리공* | 5~1급, 특급 | 에너지/기계 | 2급이상 전문학교졸업 |
| | 무선수* | 3~1급, 특급 | 통신 | |
| | 용접공 5급* | 1~8급 | 기계 | 전문학교졸업 4급 |
| | 영화기사* | 1~6급 | 산업응용 | 전문학교졸업 3급 |
| | 철기원(선로원)* | 1~7급 | 무 | |
| | 전기공* | 1~7급 | 전기 | |
| | 전기기기조립공* | 1~8급 | 전기 | 전문학교졸업 5급 |
| | 유전기재 수리공* | 1~8급 | 통신 | 체신대학졸업 7급 |
| | 설계사(의류)* | 1~5급, 고급1~3급 | 섬유 | 상업전문학교 5급 평양상업대 고급 1급 |
| | 편집공* | 1~7급 | 섬유 | |
| | 미용* | 1~5급 | 위생 | |
| | 기관차 승무원* | 5단계직책 | 기계 | 직책으로 구분 |
| 준기사 | 금속* | 단 일 | 금속 | |
| | 농기계* | 단 일 | 기계 | |
| | 과수원예* | 단 일 | 농림 | |
| | 행정경리(부기)* | 단 일 | 사무서비스 | |
| | 조산원** | 6~1급 | 국가 | |
| | 인민경제사 | 단 일 | 무 | 인민경제대학 졸업 |
| | 준경제사 | 단 일 | 무 | |
| 기 사 | 농산* | 5~1급 | 농림 | |
| | 연구사(육종 및 병리)* | 5~1급 | 농림 | |
| | 전기철도* | 3~1급 | 전기 | 준기사(3~1급) |
| | 건축설계원* | 6~1급 | 건축 | |
| | 항만 및 수로건설* | 6~1급 | 토목 | |
| | 설계원* | 5~1급 | 토목 | 준기사(4~1급) |
| | 화학* | 5~1급 | 화학 | |
| | 반도체전문가*** | 단 일 | 무 | |
| | 전문가자격(불어)** | 1~4급 | 국가 | |
| | 경제사*** | 4~1급 | 무 | 정준택경제대학 졸업 |

주) * :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에 해당

** : 남한의 국가자격에 해당(국가) / *** : 남한에 해당자격 없음

또한 기관차 승무원 자격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직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는 이들의 업무 특성상 전시에는 평상시의 직책이 바로 군대계급의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자격과 달리 직책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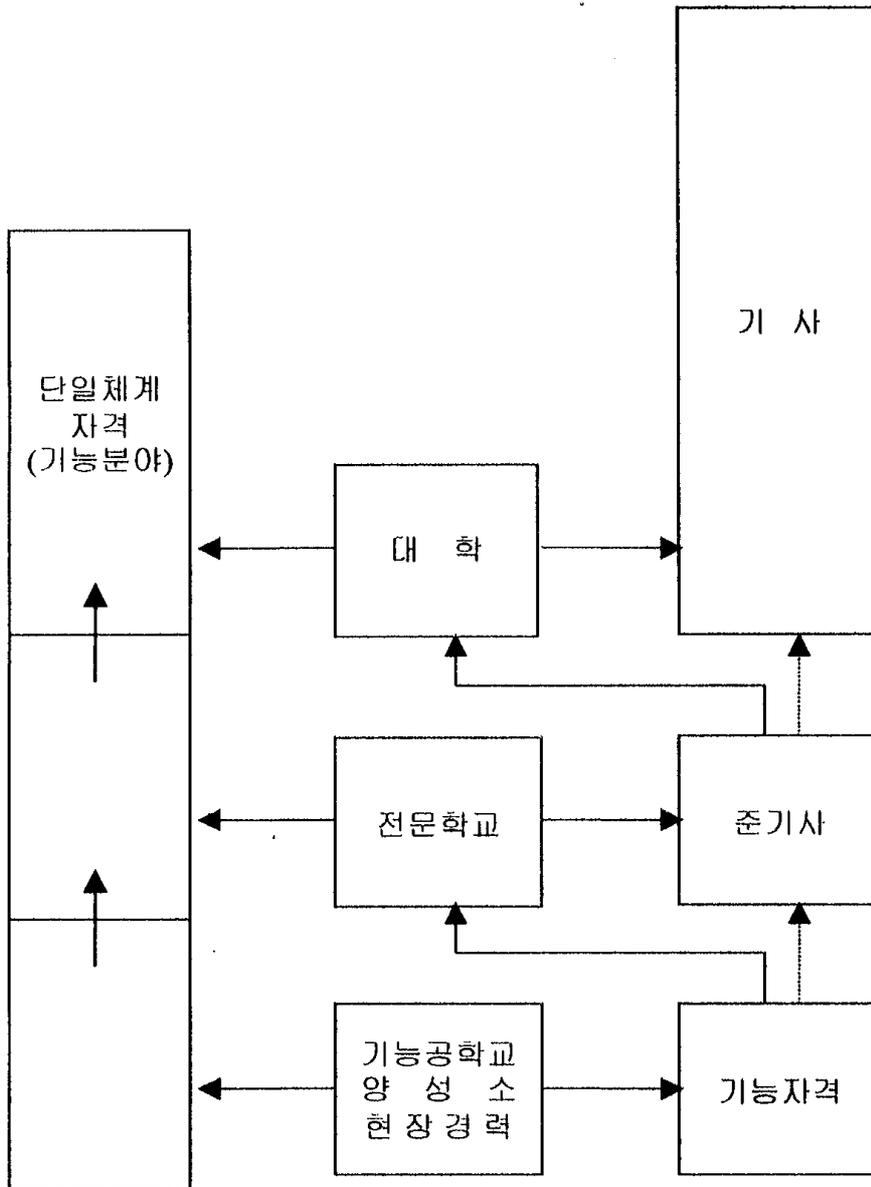
기사자격의 종목에는 연구사라는 자격이 있다. 이는 대학졸업 후 무급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분야로 진출했을 경우 취득하는 자격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연구사라는 자격이 있다. 연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산업현장에 배치되면 현장의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연구사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 북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 동일한 자격종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 후의 직무에 따라 취득하는 자격 종목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 자격의 내용

북한의 자격은 크게 기사, 준기사⁵⁾, 기능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응시자의 자격응시 요건 중 최소학력요건의 고려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학력에 따른 자격체계를 [그림 III-2]에 제시하였다.

기능분야 중 단일체제로 되어있는 종목은 급수별로 각급 학교와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기능·기술분야는 기사, 준기사, 기능의 세 등급이 서로 연계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공은 기능공학교, 양성소 등의 교육훈련기관 수료, 준기사는 전문학교, 기사는 대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의 특정학과 졸업자는 무급 기사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준기사의 경우도 기사와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기사 및 준기사 자격에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경제사, 인민경제사 자격, 정치학, 문학사 자격 등이 존재한다. 이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당 학과와 관련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5) 준기사는 과거에 '기수'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준기사'로 명칭 변경



주)▶ 검정시험을 통한 자격취득

[그림 III-2] 북한의 학력에 따른 자격체계도

그러나 기능공의 경우는 교육훈련기관 수료 후, 또는 현장경력을 쌓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기술분야 자격의 경우 전문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림 III-2]에서 제시한 북한 자격체제를

바탕으로 면담에서 드러난 북한 자격을 <표 Ⅲ-6>와 같이 기능, 준기사,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분류의 기준은 최하위 자격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 학력요건이다. 예를 들어 용접공, 설계원(의류), 영화기사 등의 자격은 전문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취득할 수 있으나 1급 자격은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 졸업하거나 현장경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모든 기능 자격의 급수는 원칙적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기사, 준기사, 기능은 다시 여러 단계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는 6~1급의 나누어져 있으며 종목에 따라 3~1급, 5~1급 등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 자격의 급수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급수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5~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은 매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최고급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18년의 현장 경험이 요구되고, 매 급수마다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사 수준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자격은 주로 단일 급수로 이루어져 있다.

준기사도 6~1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을 통해 나타난 준기사의 급수는 주로 단일급, 3~1급, 4~1급 등으로 나누어져 기사 등급보다 적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기사의 급수는 기사 자격 급수와 유사하게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 자격은 기사, 준기사 자격보다 더욱 급수가 세분화되어 최대 1~8급까지 나누어져 있으나 급수 체계는 기사, 준기사 자격처럼 내림차순으로 일정하게 되어있지 않고, 종목 따라 달랐다. 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내림차순보다 급수의 구분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 대체로 오름차순으로 급수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급수가 8급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자격은 남한의 기능장 수준의 기능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종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의 경우 전문학교 졸업시 4급을 취득하고, 7~8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차원에서 자격자를 관리,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

우 이들을 동원하여 중요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 자격체제의 특성

1) 기능자격

가) 응시자격

북한의 기능 자격은 거의 대부분 응시자격으로 관련분야의 교육훈련이나 현장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용, 사진 등과 같이 응시자격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교육훈련은 관련분야의 양성소와 기능공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자는 현장책임자에게 현장근무 경력 및 능력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모든 자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자는 현장 경력자보다 상위 등급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미장기능의 경우 양성소 및 기능공학교를 졸업한 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3~2급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경력자가 응시할 경우 4급부터 응시해야 한다. 그러나 용접공(1~8급), 미용(1~7급) 등의 경우는 현장경력자, 양성소 졸업자가 모두 정해진 특정 급수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의 성적에 따라 최고 4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상위등급의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응시할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물론 시험의 내용과 수준은 등급의 수준이 올라갈 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대체로 기능자격은 응시자격으로 학력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능 자격이라도 [그림 III-2]에서와 같이 단일체제의 기능 자격은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대학졸업자가 상위급수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문학교 졸업시 용접은 4급, 영화기사는 3급, 설계사(의류)는 5급 등을 취득하게 된다.

열관리공자격은 5~1급과 특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급 이상의 자

격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교(열관리공 전문학교 등)를 졸업해야 한다. 열관리공 자격을 제외한 다른 기능 자격의 경우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자격시험 합격을 통해 최상위 급수까지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능 자격에는 학력요건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능자격의 응시조건을 정리하면 교육훈련 및 현장경력을 요구하는 자격과 자격응시조건이 없는 자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조건은 없으나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및 대학졸업자에게 수여되는 급수가 있다.

나) 검정방법

검정은 남한의 경우와 같이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론시험은 작업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식 서술형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접공 시험의 경우 산소용접, 전기용접 등 해당 급수의 수준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험의 내용, 범위, 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어려워진다. 실기시험은 단편적인 개인의 업무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통해 자격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도저의 경우 단순히 운전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도저를 운전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미장의 경우 직접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실기시험을 실시, 보통 3일 동안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전체적으로 기능자격은 필기보다는 실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고급등급의 자격시험은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게 간주, 시험에서 이론 부분이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다) 기능 자격의 특징

기능자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낮은 급수의 기능 자격은 양성소와 같은 교육훈련기관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큰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험문제는 국가에서 출제한 것을 가지고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취득자가 기업소를 옮길 경우 기존 취득 자격의 등급이 이동한 기업소에서 하향 인정되기도 있다.

둘째, 자격의 관리는 남한 경우와 같이 특정 전문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운영하지 않고 자격종목마다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며, 동일 종목의 자격에 있어서도 급수에 따라 관리·운영기관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여러 급수로 세분화되어 있는 용접(1~8급), 유선기재수리공(1~8급), 전기기기조립공(1~8급) 등의 자격종목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용접기능의 경우 1~4급은 해당 기업소, 5급 이상은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7~8급 자격 소지자는 국가차원에서 엄정하게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관리·활용한다. 유선기재수리공의 경우는 1~5급까지는 군단 노동행정부에서, 6~8급까지는 인민무력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격은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특정 전문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종목별, 급수별로 해당 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기능 자격일지라도 고급 급수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활용한다.

셋째, 자격 유효기간의 측면에서 목공기능공, 전기기기조립공 등의 자격은 1년에 한번씩 급수 유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자격취득자의 현재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격에 대해 급수 유지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2) 준기사 및 기사자격

가) 응시자격

준기사, 기사자격은 남한의 산업기사, 기사 수준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남한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문학교 및 대학교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물론 검정시험제도라는 것이 있어 준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정규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 자격을 소지자가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일정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준기사 자격 취득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검정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준기사 및 기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검정방법

남한의 자격시험과 달리 북한에서는 관련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각각 무급의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무급 자격은 자격 취득 후 산업현장에 배치를 받아 1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쌓은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급수로 바뀐다. 물론 무급의 준기사,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이때 대학 자체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 논문, 실기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을 일종의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졸업시험은 외국어와 전공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논문은 마지막 학년에 실시하는 관련 분야의 현장실습(약 6개월)기간 동안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학교도 필기시험(외국어, 전공 등)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대학과 달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전문학교에서의 논문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기시험은 주로 현장실습 기간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준기사 및 기사자격의 경우 상위급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보통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때는 주로 필기시험(외국어, 전공)과 현장에서의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격에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업무실적이다.

다) 준기사 및 기사자격의 특성

준기사 및 기사자격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은 실기와 함께 이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학교, 대학 졸업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검정시험제도를 설치, 기능 및 준기사 자격의 최고등급을 소유하고 있는 경력자에게 준기사, 기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전문학교, 대학은 학과마다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단일급의 자격을 제외한 모든 자격은 무급으로 시작하여 현장에 배치된 후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통해 최하위 급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사보 자격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셋째, 준기사 자격은 단일급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기사 자격은 대부분 자격종목에 따라 3~1급, 5~1급, 6~1급 등의 급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 관리기관은 기능자격과 유사하게 자격종목 및 등급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즉,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6~1급) 자격은 대학졸업자가 배치되는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5~6급은 관련정부기관(전기석탄공업성), 1~2급은 중앙의 전력공업부, 자원개발부에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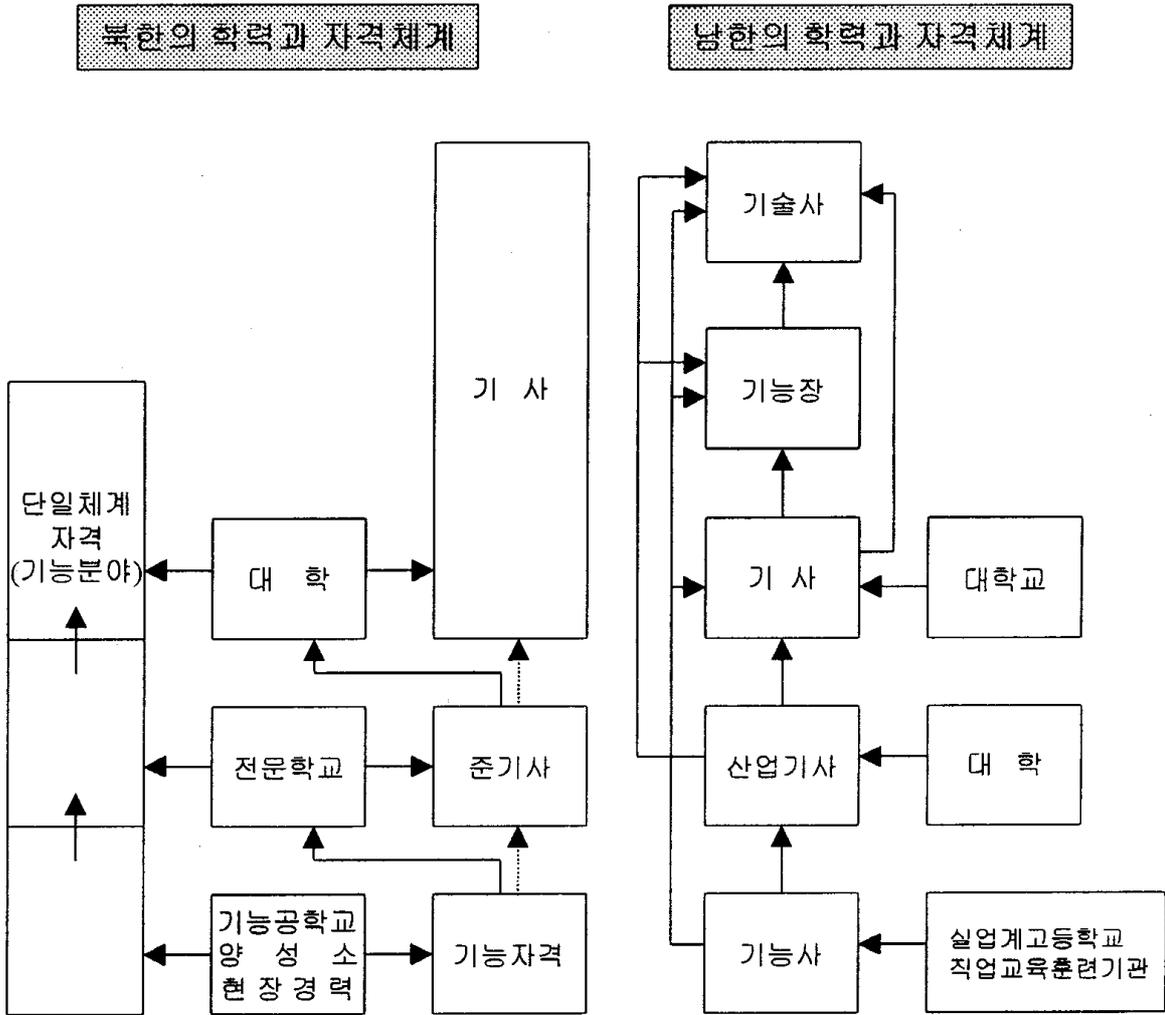
넷째,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의 경우 남한의 자격제도와 달리 학력요건이 중요하지만 현장경험이 없이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기능에서 준기사나 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력에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학력체계를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체계를 비교하면 [그림 III-3]과 같다. 즉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지 북한의 경우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지만

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주)---▶검정시험을 통한 자격응시

[그림 III-3] 남북한 자격체계의 비교(기능·기술분야)

단일체계의 기능 자격 중 학력 조건은 없지만 설계사(의류), 영화기사, 용접 등의 자격은 기능 자격이라 할지라도 급수에 따라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자에 수여되는 급수가 있으며, 최고의 수준의 급수는 고급기술자로 분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기능장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판단

된다. 기사의 경우 설계원(토목)은 5~1급으로 되어있고 상위급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최소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단기간에 취득하더라도 2급을 취득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된다. 또한 자격 점정방법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실적과 이론시험, 외국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계원 2급 이상의 급수는 남한의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점정방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기능 자격은 필기시험과 실제 작업의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학교 및 양성소를 졸업하지 않고 경력을 통해 자격에 응시하는 종목 가운데에는 실기만 실시하는 종목도 있으나 자격 수준의 특성상 이론보다 실기능력의 중요함을 이해한다면 남한 자격으로 인정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경우도 대부분 기능자격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미장, 조적, 건축목공, 비계 등의 종목과 같이 이론적인 면보다 기능이 중요한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은 졸업 시 해당분야에 대한 이론시험, 외국어, 논문 등을 통과해야만 무급의 자격 취득하고, 급수의 자격은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학력, 자격, 산업현장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북한취득 학력·자격·경력의 남한인정 실태

1. 북한취득 학력의 인정 실태

가. 북한취득 학력 인정의 배경

1)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남한에서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도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이수한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①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①의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②

2) 학제 비교

북한은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⁶⁾. 남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여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학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 IV-1]에서 남북한 학제비교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IV-1]에서 남북한의 교육연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북한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고등전문학교 2~3년, 대학교 4~6년, 준박사원 3~4년, 박사원 2년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남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2~3년, 대학교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6년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종류와 교육연한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학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연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학력을 남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IV-1]에서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의 학교로 각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전문학교는 북한 전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전문학교, 예술전문학교 등과 특정한 지역에서만 필요로 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6) 북한은 유치원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 총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교육부에서는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1년을 교육연한으로 인정하고 않고 있으며 총 10년의 교육연한을 북한의 의무교육연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산고등광업전문학교 등의 2종류로 구별된다(김종철 외, 1996).

| | | | |
|--------------------------------|-----------------------|-------------------------|--------------------|
| 북한성인학교 | 북한 | | 남한 |
| | 유치원 |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의무 | 취학전 교육 (비의무) |
| | 인민학교 4년 | | 초등학교 6년 |
| 노동자 고등중학교 | 고 등 중 학 교 | 중등반 4년 | 중학교 3년 |
| | | 고등반 2년 | 고등학교 3년 |
| 어장대학 농장대학 공장대학 (5~6년) | 교원대학 3년 | 고등전문 학교 2~3년 | 전문대학 2~3년 |
| | | 대학 4~6년 | |
| | 준박사원 3~4년 | | 석사 2년 |
| | 박사원 2년 | | 박사 3~6년 |

 는 의무교육기간

[그림 IV-1] 남북한의 학제비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회(1990), 북한의 고등교육체제연구, p. 42.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5~6년 과정의 학교로 각 산업체, 공장, 협동농장 등에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학교는 공장, 기업소, 기타 해당분야 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 직능교육을 실시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업은 주로 2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정규대학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은 고등전문학교 수준의 학력 취득자가 진학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는 1년제의 예비과를 거쳐 진학할 수 있다(한만길, 1997).

3) 교육시간 비교

남북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의 교육시간과 그 구성비를 <표 IV-1>에서 비교하였다.

<표 IV-1> 남북한 교육시간 비교

| | 내용구분 | 북한 | | 남한 | |
|-------|------|--------|--------|--------|--------|
| | | 시간 | 구성비(%) | 시간 | 구성비(%) |
| 인민학교 | 사상교육 | 1.221 | 33.8 | 1.060 | 18.3 |
| | 일반교육 | 2.382 | 66.2 | 4.760 | 81.7 |
| | 합계 | 3.603 | 100 | 5.820 | 100 |
| 고등중학교 | 사상교육 | 1.599 | 24 | 1.373 | 19.2 |
| | 일반교육 | 5.027 | 76 | 5.767 | 80.8 |
| | 합계 | 6.626 | 100 | 7.140 | 100 |
| 대학교 | 사상교육 | 2.250 | 41.2 | 0 | 0 |
| | 일반교육 | 3.210 | 58.8 | 2.560 | 100 |
| | 합계 | 5.460 | 100 | 2.560 | 100 |
| 전체 | | 15.689 | 100 | 15.520 | 100 |

자료) 선한승(1995),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 129. 참고7) 보완8)9)

교육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남북한 공히 대략 15,000 시간으로 학습 시간의 절대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체 교육 시간 가운데 사상교육의 비중이 30% 정도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인민학교와 대학교에서 사상교육이 매우 비중있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상교육이 20%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교육이 북한에 비해서 훨씬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의 경우 남한에서는 80년대 후반 국민윤리 과목이 폐지된 이후 사상교육관련 과목이 없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사상교육이 전체 수업시간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와 남한의 중·고등학교의 일반교육시간을 비교하면 남한이 740시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일반교육시간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단계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일반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학에서는 북한의 일반교육 할애시간이 남한보다 610시간이 더 많음으로써 북한 대학교에서의 일반교육에 대한 절대 학습시간이 남한보다 더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대학교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북한의 대학교 학력을 남한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선한승은 연구에서 혁명역사, 특강, 공산주의 도덕과 국어 중 사상교육을 합산한 시간으로 국어 과목의 사상교육 비율은 인민학교 67%, 고등중학교 72%를 적용하였다. 남한의 경우 도덕, 국민윤리, 국어, 사회, 정치 등의 과목을 사상교육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각 과목의 총 수업시간에서 국어는 30%, 도덕 100%, 사회 100%의 비율로 정치사상교육의 시간을 책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교육시간과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책정한 수치이다.

9)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pp. 6~7 참고. 교육부

결론적으로 남북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학제나 교육시간, 의무교육기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육수준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남궁영, 1996).

4) 교육내용 비교

남북한의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수학교과를 통해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북한 공히 내용이나 수준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내용을 기술하는 방향과 학습목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신성균 외1996). 연구에 의하면 ① 학습 내용과 계열성의 측면에서, ② 내용영역 구분의 측면에서, ③ 각 영역별로 다루어지는 내용의 비중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지리교육내용을 예로 들어 비교한다면 교육의 목적은 남북한이 상이하지만 지리교과 내용의 수준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최석진 외, 1997).

따라서 교육의 단계와 개별적인 교육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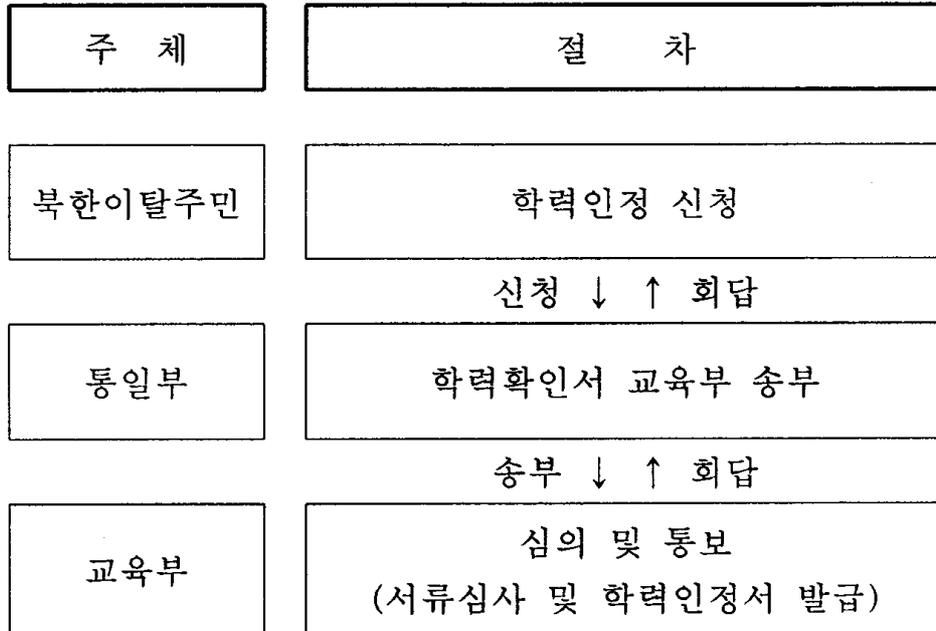
대학교육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북한의 경우 기초지식 위주의 이론교육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자재의 부족으로 실험·실습 수업은 남한에 비해 적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론적인(기초 및 전문이론) 지식 측면에서는 남한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¹⁰⁾.

나. 학력인정 절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V-2]과 같다.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10) 이러한 의견은 대북경협 사업으로 북한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기술담당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북경협 사업체 기술담당자 전화면담, 1999. 7.

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는 학력인정신청서를 교육부에 송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심사하여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IV-2]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절차¹¹⁾

다. 학력인정 사례

학력의 인정은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의 인정을 통해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았다.

11)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학력을 기재한 신청서와 남한 입국 후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교육부로 송부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력을 심의한다. 인정받은 학력은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통일부 관계관 면담 내용, 1999. 8.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를 희망학교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학력확인서 내용을 심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1999년 현재 이러한 학력의 확인을 통해 약 75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2.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 실태

가.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배경

1)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남한에서 동일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 시험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①

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①의 5

법 제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 면제는 주무 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6조 제3호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증거서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6조 2의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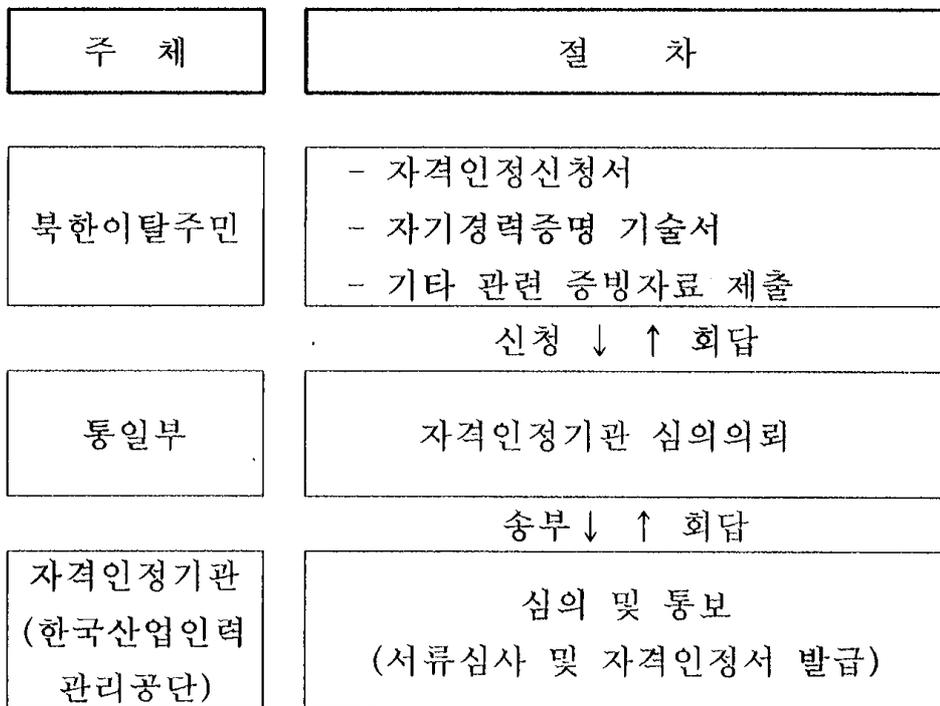
주무부장관은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6조 2의 ②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자격체계 및 종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인정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인정절차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V-3]과 같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경력이나 이력을 기술하여 통일부에 제출한다. 통일부는 이것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송부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심의를 통해 신청한 자격을 인정한다.



[그림 IV-3]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절차

다. 북한취득 자격 인정사례

지금까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한 사례를 완전인정 사례, 부분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로 구분하여 해당 북한자격의 응시자격, 자격체계, 시험 내용 등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완전인정 사례

가) 요리사(1998년 인정)

○ 응시자격

전문대학 과정을 마치고 필기시험과 구답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 졸업논문 시험에 합격하면 요리사 최하위 자격인 1급 자격이 주어짐.

○ 자격체계

1급~3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급이 최상의 급수임. 상위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현장경력이 요구됨.

○ 시험내용

보건학, 영양위생학, 요리재료학, 원가계산학, 전공요리학의 필기 및 구답 시험과 전공요리를 만드는 시험.

○ 자격신청자 경력

평양상업대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4년간 근무함.

○ 자격인정사유

신청자가 졸업한 평양상업대 요리학과 교육과정과 신청자의 현장 경력을 고려할 때 요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발급함.

나)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1999년 인정)

○ 응시자격

대학 수력공학부 수력건설학과, 항만 및 수로건설학과를 졸업하고 필기시험, 구답시험 및 논문시험에 합격하면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 6급 자격이 주어짐.

○ 자격체계

1급~6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급이 최상위 급수. 상위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현장경력이 요구됨.

○ 시험내용

항만공학, 발전공학, 수력발전, 수력구조물 등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 및

구답시험에 응시한 후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제출해야 함.

○ 자격신청자 경력

합흥수리대학을 졸업한 후 4년 6개월의 현장 경력을 쌓아 해운 및 항만기사 5급 자격을 취득하였음.

○ 자격인정사유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의 교육과정과 현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토목산업기사 자격을 인정함.

2) 부분인정사례

가) 운전면허

북한에서 운전수 자격을 취득한 경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내의 교통 법규의 파악을 위한 필기시험은 실시하되 실기시험(코스)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3) 불인정사례

가) 의료분야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제사, 조산원 등의 의료분야 자격을 취득한 경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을 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한 의료관련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취득 자격 인정을 위한 법개정이 요구되는데 의료분야 자격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고등교육법」 70조에 근거,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인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료 분야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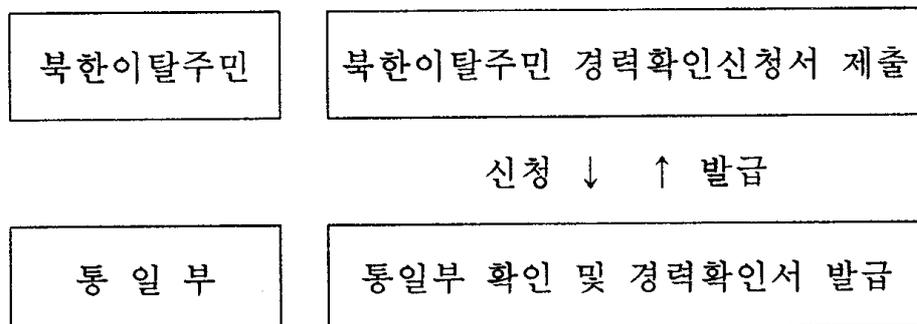
3. 북한취득 경력의 인정 실태

가. 관계법령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들어온 직후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력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경우 남한주민의 이력서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나. 인정절차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통일부에 경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V-4]과 같다.



[그림 IV-4]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 절차

다. 인정사례

현재 북한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귀순한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때 군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종사하던 분야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구서독의 구동독 학력·자격·경력 인정사례

이미 통일을 이룩한 독일과 아직 분단상태로 남아있는 남북한은 분단의 배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구서독이 구동독의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문제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처리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구서독은 구동독의 학력·자격을 그대로 인정, 구서독에서 취득한 학력·자격과 동등하게 대우했다(박재운 외, 1992). 즉 구서독과 구동독 간에 맺어진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학력이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신연방주에서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았다(통일부, 1996). 또한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대상직업과 전문직업의 체제에 따른 시험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그리고 공인된 직업훈련 대상직업에서의 도제시험은 관청의 확인 없이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독일통일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일조약의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동독내에서 취득되거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 졸업 자격 또는 자격증은 제3조에 명시된 지역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또는 서 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의 다른주들 내에서 시행된 시험이

나 취득한 자격증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등가치 인정은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의 확인으로 결정된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 인정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인 규정 및 조약 내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취득되었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또는 수여받은 대학 직업 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

- ② 교원시험에는 문교장관 회의에서 통용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문교장관회의는 이에 상응하는 과도 규정을 제정한다.
- ③ 견습직 조직법과 전문직 조직법에 의한 시험 합격증과 공인된 견습직의 졸업 시험과 기능 시험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 ④ 제32조에 언급된 지역들 내에서의 학제 변경에 요청되는 규정들은 제 1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결정된다. 학위 인정을 위한 필요 규정들은 문교장관회의에 합의된다. 상기 두 경우는 함부르크 협정과 문교장관 회의에서 추가합의 사항을 그 기초로 한다.
- ⑤ 졸업 이전에 대학을 바꾸는 학생들은 졸업 시험 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ABD) 제7조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 고시 관련 규정에 의거 그때까지의 학업성적 및 시험결과를 인정받는다.
- ⑥ 등독의 기술, 전문학교 졸업증을 바탕으로 확인된 대학 진학 자격은 1990년 5월 10일 문교장관 회의 결정과 그 부록 B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 및 대학졸업 후의 상급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의 인정과 관계된 기타 원칙과 절차는 문교장관 회의에 의해 마련된다.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37조 교육

이상과 같이 구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의 학력,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했다. 다시 말해 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의 졸업증 및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구동독 지역에서 계속 유효하며, 구서독 지역의 졸업증, 자격증 등과 비교하여 취득기준이 비슷할 때에는 구서독 지역에서도 인정하였다. 이때 졸업장과 자격증에 대한 등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주정부 문교성이나 그 업무를 위임받는 산하기관에 졸업증 및

자격증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독일은 자격, 학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인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규정을 통해 구동독의 자격, 학력을 인정했다(김종철 외, 1996);(김영윤 외, 1996).

5. 시사점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경력·자격 인정실태를 살펴보았다.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남한은 북한의 학력을 남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자격에 있어서는 북한의 자격을 남한의 자격에 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자격의 인정을 위한 시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경력 인정 또한 지금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현행법에서는 현재 북한의 학력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일부 조항만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인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진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 방안」 마련에 관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 실태와 사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에 인정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구체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V.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1. 기본방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사회에 여러 가지 장단기 해결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들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과 경력을 남한에서 인정하는 문제이다. 자격과 경력의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 과제의 해결방안에 앞서서 인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사회·경제 체제의 차이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북한의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 접근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민족화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은 이들의 물질·인적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우선적으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민족화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경력 인정 시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 단체, 정부부처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경력의 특수성과 남한사회의 현

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합리적인 경력의 인정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은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차별 없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정 자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다섯째, 자격 및 경력인정 방안은 통일 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통일전의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자격인정방안

가. 자격등급별 연계방안

자격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격소지자의 능력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남한에서도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후자는 직접비교가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북한의 자격등급,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남한의 자격과 비교하는 간접 방식으로 자격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남북한의 체제를 한 체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격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응시 조건에서의 학력 비교를 통해 북한의 자격 수준을 평가하였다.

현재 국가간, 지역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EU, APEC, NAFTA 등의 경우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 먼저 학력의 인정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격 수준을 서로 비교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격응시 조건상 학력을 비교하여 서로의 자격수준을 결정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 자격의 인정의 경우도 응시조건 중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자격을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사, 교사 등의 자격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격의 인정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사의 경우도 법적으로 독점업무가 있는 전문기술자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자격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북한자격의 인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남한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북한자격 등급을 <표 V-1>에 제시했다.

첫째, 자격응시 조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북한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한다.

둘째, 남한의 기술사 자격은 인정자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학·경력을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셋째, 남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하여 북한자격을 인정한다. 즉, 북한의 기사 자격이더라도 남한에서 기능사 자격만 설치되어 있다면 기능사 자격으로 인정한다.

넷째,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은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시 취득하는 등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자격의 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으로 인정한다.

다섯째, 남한 기능장 자격의 인정은 8단계 이상의 기능급수가 있는 북한

기능자격의 최고위등급(7~8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여섯째, 단일급수의 기사, 준기사를 제외한 무급자격은 남한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력을 인정하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일곱째,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으로의 인정이 필요한 북한자격은 해당자격의 응시자격·검정내용을 남한 국가자격의 응시자격·검정내용과 비교하여 인정한다.

<표 V-1> 남한 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북한자격의 등급

| 남 한 | | | 북 한 | |
|-----------------------------|------|---|------|------------------|
| 응시조건(학력중심) | 자격등급 | | 자격등급 | 응시조건(학력중심) |
| · 대 학 | 기 사 | ↔ | 기 사 | · 대 학 |
| | | | 기 능 | |
| · 전문대학 | 산업기사 | ↔ | 준기사 | · 전문학교 |
| | | | 기 능 | |
| · 기능대학기능장과정수료 · 11년 실무경력 | 기능장 | ↔ | 기 능 | · 기능공학교 |
| · 응시조건 무 | 기능사 | | | · 양성소 · 현장 경력 |

<표 V-2>는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에서 드러난 자격종목을 <표 V-1>을 근거로 남한 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종목 및 등급으로 제시한 예시안이다.

기능 자격에서 목공, 미장, 불도저, 사진, 편직공, 미용은 모든 등급에 학력제한이 없고 남한에서도 기능사 이외에 해당자격종목이 없으므로 기능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기능 자격 중에서 열관리공 자격은 2급 이상에서는 응시자격으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므로 5~3급은 기능사, 1~2급, 특급은 산업

기사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무선수 자격은 학력의 제한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수준인 고등통신학교(2년) 등을 졸업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급 이상은 산업기사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용접공은 1~4급, 5~6급, 7~8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격의 수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다. 특히 이 종목은 고등전문학교 졸업시 4급을 취득하지만,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1~4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급은 기능사, 5~6급은 산업기사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7~8급은 높은 기능·기술을 요구하므로 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전기기기조립공, 유전기재 수리공 역시 용접공과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1~4급은 기능사, 5~6급은 산업기사, 7~8급은 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표 V-2> 북한 자격의 인정 가능한 자격종목 및 등급

| 구 분 | 북한자격 | | 급 수 | 인정 가능한 자격 및 등급 |
|-----|--------------|---------------|------|----------------|
| | 자격종목 | 해당분야 (남 한) | | |
| 기 사 | 농산기사 | 농림 | 5~1급 | 기사(종자 등) |
| | 연구사(육종 및 병리) | 농림 | 5~1급 | 기사(종자 등) |
| | 전기철도기사 | 전기 | 3~1급 | 기사(전기철도) |
| | 건축설계원 | 건축 | 6~1급 | 기사(건축) |
| |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 | 토목 | 6~1급 | 기사(토목) |
| | 설계원 | 토목 | 5~1급 | 기사(토목) |
| | 화학기사 | 화공 | 5~1급 | 기사(공업화학 등) |
| | 반도체전문가 | | 단 일 | 해당종목 없음 |
| 준기사 | 금속 준기사 | 기계, 금속 | 단 일 | 산업기사(기계, 금속분야) |
| | 농기계 기수 | 기계 | 단 일 | 산업기사(농업기계) |
| | 과수원에 준기사 | 농림 | 단 일 | 산업기사(시설원예) |
| | 행정경리(부기)준기사 | 사무서비스 | 단 일 | 부기(1~3급) |

| 구 분 | 북한자격 | | 급 수 | 인정 가능한 자격 및 등급 |
|------|------------|---------------|-----------------|--|
| | 자격종목 | 해당분야 (남 한) | | |
| 기 능 | 목공기능공 | 건축 | 5~1급 | 건축목공기능사 |
| | 미장기능공 | 건축 | 4~1급 | 미장기능사 |
| | 불도저 | 기계 | 4~1급 | 불도저운전기능사 |
| | 사 진 | 산업용용 | 5~1급 | 사진기능사 |
| | 열관리공 | 에너지/ 기계 | 5~1급, 특급 | 5~3급 :보일러취급기능사 2~특급: 열관리산업기사 |
| | 무선수 | 통신 | 3~1급, 특급 | 3,2급 :기능사(무선통신기사) 1, 특급:산업기사(무선통신산업기 사) |
| | 용접공 | 기계 | 1~8급 | 1~4급:용접기능사, 5,6급:용접산 업기사, 7,8급:용접기사, 기능장 |
| | 영화기사 | 산업용용 | 1~6급 | 5,6급:영사산업기사 1~4급:영사기능사 |
| | 철기원(선로원) | 부 | 1~7급 | 해당종목 없음 |
| | 전기공 | 전기 | 1~7급 | 기능사(전기공사) |
| | 전기기기조립공 | 전기 | 1~8급 | 1~4급 : 기능사(전기기기, 전기 공사 등) 5,6급 : 산업기사(전기기기, 전기 공사 등) 7,8급 : 기사(전기공사 등), 기능장(전기기기 등) |
| | 유선기계 수리공 | 통신 | 1~8급 | 1~4급:기능사(통신기기,전기공사 등) 5,6급:산업기사(통신선로 등) 7~8급:기능장(통신설비) |
| | 설계사(의류) | 섬유 | 1~5급, 고급1,2급 | 1~4급:기능사(양복, 양장 등) 5급:산업기사(양복, 한복등), 고급 1,2급:기사(의류) |
| | 편직공 | 섬유 | 1~7급 | 직물기능사 등 |
| | 미용 | 위생 | 1~5급 | 미용 |
| | 기관차 승무원 자격 | 기계 | 5단계직책 | 열차조작산업기사 |
| 국가자격 | 통역전문가 | 문화관광 | 단 일 | 관광통역 |
| | 조산원 | 보건복지 | 6~1급 | 조산사 |

영화기사 자격의 경우 자격의 명칭은 기사이지만 응시자격에 학력 조건이 없고 전문대학수준의 영화기술원전문학교(2년제) 졸업시 3급을 취득하므로 3급 이상은 산업기사로, 1~2급은 기능사로 인정하였다.

설계사(의류) 또한 학력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상업전문학교 졸업시 5급, 평양상업대학교 졸업시 고급 1급의 자격을 취득하므로 1~4급은 기능사, 5급은 산업기사, 고급은 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인정하였다. 기관차승무원 자격은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최하위 직급부터 시작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상 산업기사가 최고 자격이므로 모든 직책에 대해 산업기사로 인정하였다. 전기공 자격은 등급에 따른 수준이 분명하지 않아 모든 급수에 대해 기능사로 인정하였다. 준기사, 기사 자격 가운데 남한의 기술자격에 없는 반도체전문가자격은 해당종목이 없어 인정이 곤란하다.

지금까지 기능·기술 관련 북한자격 종목이 남한의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과 종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자격 종목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북한 자격종목에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에 통역전문가와 조산원 자격이 있었다.

<표 V-3>에 통역전문가와 조산원 자격 종목의 응시자격과 검정내용을 비교하였다.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제시한 북한자격 인정방법에 비추어볼 때 이들 자격은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조산원 자격의 경우 6~1급까지 급수가 있고 3년마다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응시자격 면에서 남한 조산사에 비하여 1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북한 조산원의 자격이 남한의 조산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표 V-2>에 북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남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표 V-2>의 오른쪽 칸에 제시한 남한자격 종목은 북한 자격 중에서 남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한 종목들을 예시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표 V-3>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과 북한자격의 비교

| 남한자격 | 응시자격 | 검정방법 및 내용 | 북한자격 | 응시자격 | 검정방법 및 내용 |
|-------|--|---|-------|-----------------------|--|
| 관광통역원 | 18세이상 | 외국어듣기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외국어, 국사, 한국지리 등) | 통역전문가 | 관련 대학교 졸업 | 이론시험(전공) 실기시험 (구답:독해,회화,문법) 논문제출 |
| 조산사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 이 상의 조산 수 습과정을 마친 자 | 필기시험(조산학, 신생아간호학, 모자 보건학, 모자보건법) | 조산원 | 관련 전문학교 졸업(3년제) | 이론시험 (필기,구답: 외과, 내 과, 산부인과) 실기시험 (실습 평가) |

나. 북한자격 인정방안

위에서 언급한 자격 등급별 자격인정 방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방법을 자격의 종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 1 안 : 교육 훈련 및 검정을 면제한다¹²⁾.

제 2 안 :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한다.

제 3 안 : 검정을 면제하여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기

12) 여기서 제시한 1 안은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취득 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교육훈련을 거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는 것과, 둘째, 모든 자격에 대해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소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서독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훈련없이 인정이 가능한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제 1 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북한자격은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국민의 건강·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의 인정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즉, 목공기능공, 미장공, 사진, 무선수, 영화기사, 철기원, 유선기재수리공, 설계사(의류), 편직공, 미용, 금속준기사, 농기계 조수, 과수원에 준기사, 행정경리 준기사, 농산기사, 연구사(육종 및 병리), 전기철도기사, 화학기사, 통역전문가 등의 자격은 제 1 안의 적용을 통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 2 안을 적용하는 북한자격은 남한자격으로 인정될 자격이 면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격에 해당되거나 자격의 내용 중 남한의 법규, 규칙 등이 포함된 자격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자격취득자로서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단기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건설기계관리법규의 벌칙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불도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 법규를 숙지해야 하는 열관리공, KS 표시기호를 이해해야 하는 용접공, 기술기준 총칙과 전기공사관계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기공과 전기기기조립공, 건축 및 토목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축 및 토목 설계원, 항만 및 수로건설기사, 남한에서의 화물 취급 및 수송 절차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기관차 승무원 자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 3 안은 국민의 건강·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자격 종목에 적용할 수 있다. 의료분야의 자격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안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 제 1 안 >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한다.

| | |
|-----|---|
| 장 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자격인정에 따른 불만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2. 자격 취득이 대단히 용이하다 |
| 단 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정받은 자격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자격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인정받은 자격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자격이 직업선택 및 직무수행시에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3. 남한의 산업현장에서 자격취득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 자격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

<제 2 안>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한다.

| | |
|-----|---|
| 장 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이 인정받은 자격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신장시킬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 단 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훈련자료 준비, 교육훈련실시에 따른 필요시설 및 공간 확보 그리고 전문교수인력 확보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

<제 3 안> 검정을 면제하여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 | |
|-----|---|
| 장 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검정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취득자격증 관련 직업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의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인정받은 자격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단 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2. 교육 훈련을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료준비, 시설 및 공간 그리고 전문 교수인력 확보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자격 종목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면허의 성격이 없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미용 자격은 교육훈련 및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규 및 신호 체계 등이 북한의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코스 시험만을 면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검정면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제도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전향적인 방향선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받은 북한 자격은 자격인정 후 직업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노동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같은 법정단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기업, 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제 3 안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은 인정받은 자격증과 포괄적으로 관련된 모든 교육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 3 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기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1999.6.15. 개정 예규 제425호)」의 제14조 ‘훈련기준의 내용’과 제 16조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자격종목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부처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 분야 자격 인정에 대한 것을 제 3 안과 관련지어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의료 분야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무 수행을 인정하는 자격이므로 제 3 안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자격은 남한 의료관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육훈련 이수 후 반드시 의료 법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법규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완전히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격 등은 교육 기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정석홍, 1997). 그러나 남한에서 의료행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격을 인정받은(조건부 자격) 후 국립의료원 등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사의 경우 약 2년, 간호사, 조산사의 경우 약 1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수습 기간을 마친 후 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검역법, 의료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소법 등의 7개 법령을, 간호사의 경우 보건의약관계법규, 조산사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에 한해 완전히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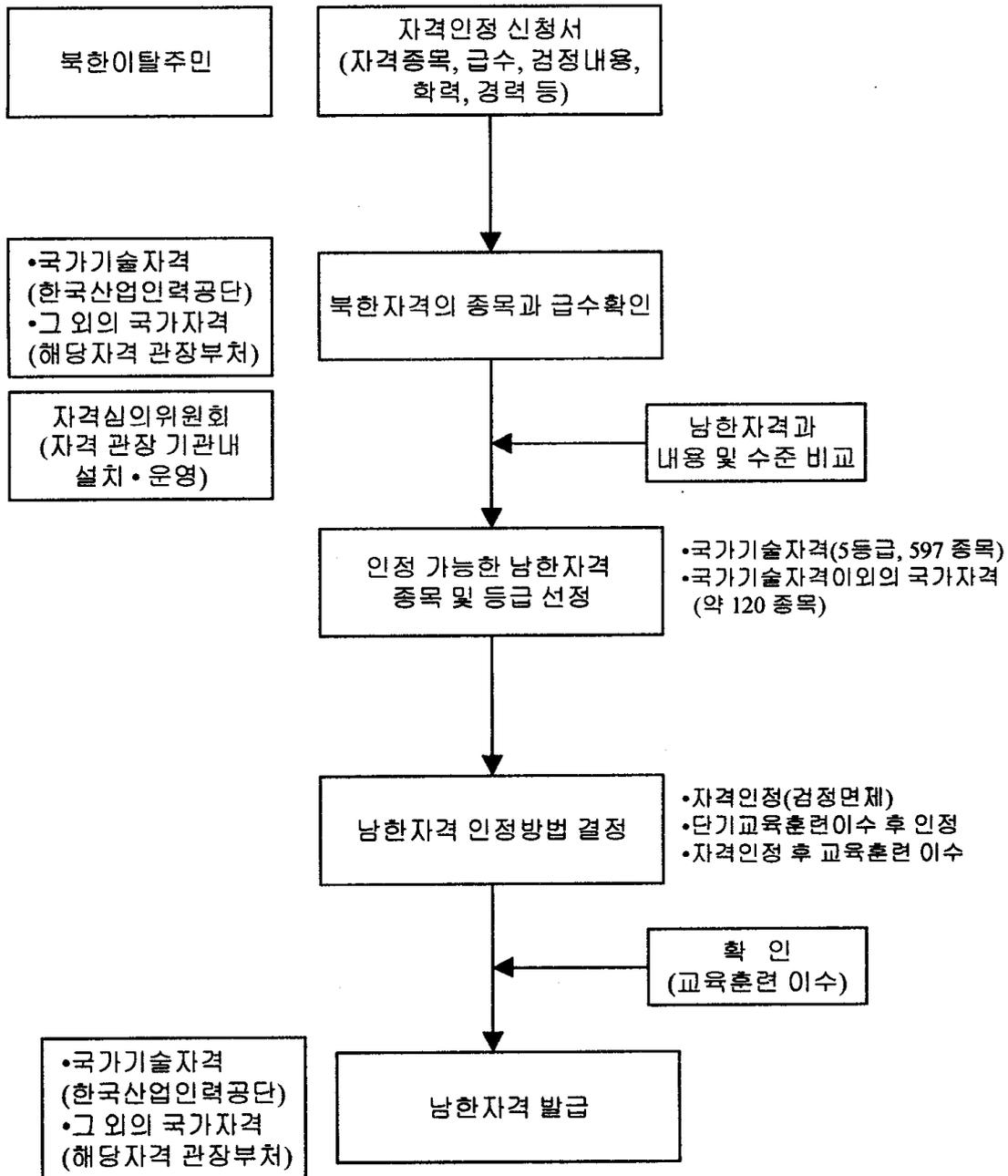
다. 북한자격의 인정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절차 및 내용을 [그림 V-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자격 인정 절차의 첫 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은 해당국가자격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민간 자격은 해당 민간자격을 관장하는 기관

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자격관장기관은 북한자격의 종목과 급수를 확인하고, 남한자격과의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인정·가능한 남한자격과 연계한 후, 이 자격의 인정방법을 결정하여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8조).



[그림 V-1]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절차 및 내용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심의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자격체계는 대체적으로 남한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기능관련 자격의 경우 각 개별 자격의 특성에 따라 남한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자격종목도 있다. 또한 남북한의 사회·경제체제, 내용, 수준의 차이 때문에 북한의 개별종목이 구체적으로 남한의 어떠한 종목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관장기관에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엄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남북한의 자격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심층면담은 면접시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이러한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자격심의위원회는 해당자격 관리기관 인사(2인), 해당자격분야 전문가(현장전문가, 학계인사 각 1인), 자격제도전문가(1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탈북시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발급 받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탈북을 감행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취득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어려운 점은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을 통해 북한취득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취득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적절하게 인정하기 위해 자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경력인정방안

가. 경력인정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은 자격의 인정문제와 함께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취득 자격의 인정이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경력의 인정은 취업 후 임금수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기업에 취업 시 북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더라도 북한 근무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업에 취업할 때 북한에서의 경력을 확인하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확인서가 일반기업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남한근로자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직장생활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및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남한에 생활의 근거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준의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공·사 기업이나 정부 부처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남북의 통일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이고,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의 경력인정 부분은 남한기업, 단체 등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취득 경력을 인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 북한경력의 인정 방안 및 절차

북한에서의 직장경력을 남한의 경력으로 인정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2단계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입직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취업보호기간)이 필요하다¹³⁾.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북한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입직 후 취업보호기간 동안 북한 근무 경력의 50% 정도를 인정한다¹⁴⁾.

둘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입직 후 취업보호기간 동안 북한 근무 경력의 20% 정도를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경력인정안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한 공·사기업의 전직장경력 환산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타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력 인정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공무원경력환산율표」의 규정을 고려하여 경력인정 폭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취업보호제 도입과 관련된 법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에는 북한

13) 현재 진행중인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보호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14) 여기에서 제시된 경력 인정 범위는 현재 남한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 인정율이다. 남한에서는 보통 전직장과 동일분야로 직장을 옮겼을 경우 전 직장 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전화면담 내용, 199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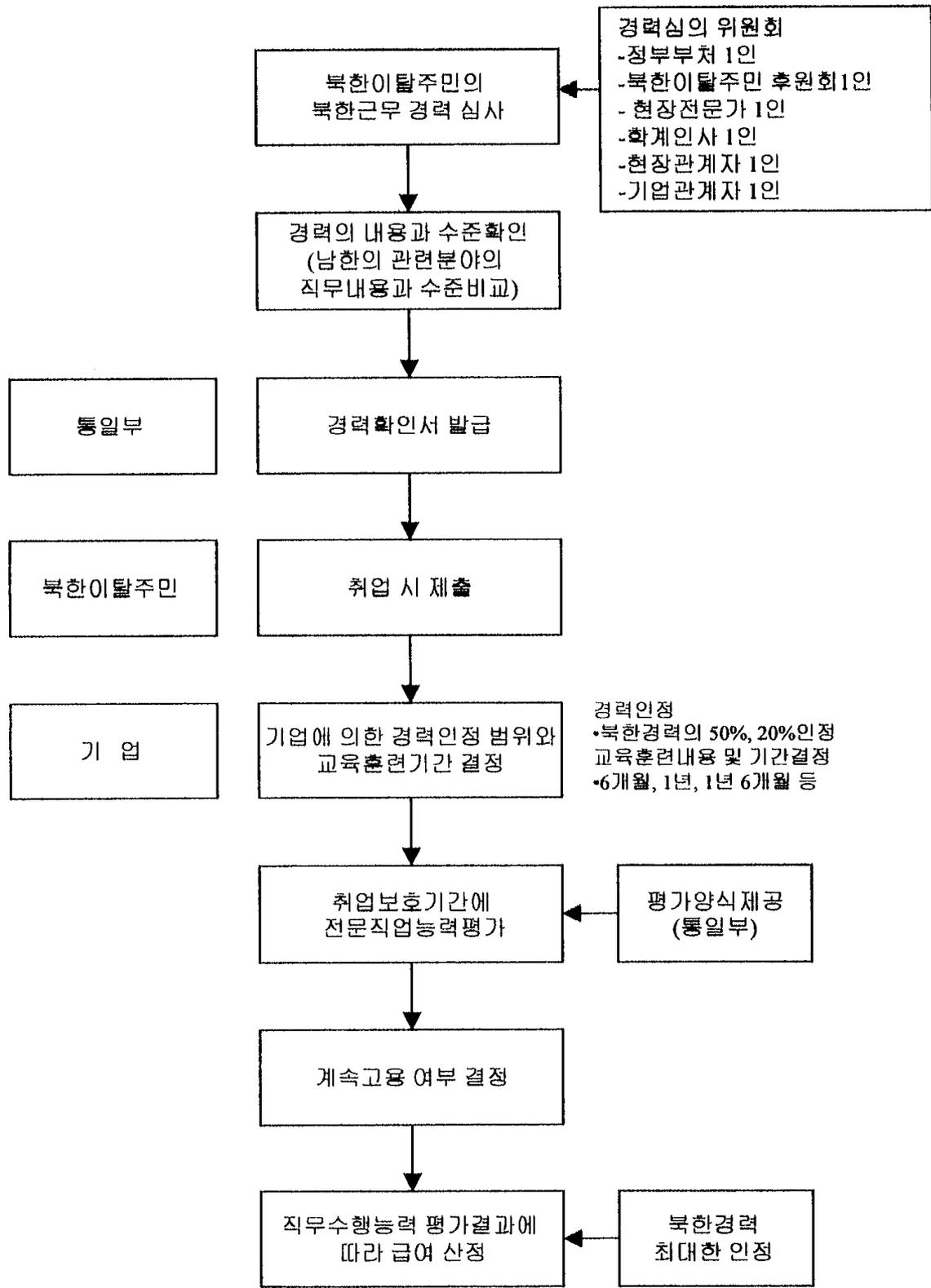
이탈주민이 받게될 월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제시된 경력인정 비율은 기업에서 미래의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단, 이 기간동안에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근로자와 대등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북한경력 인정예시안을 기업이나 단체 등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인정서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급여를 산정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력의 내용 뿐 아니라 질에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장근무경력은 매우 다양하며 학력이나 자격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경우도 있어 이들의 경력 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남한 해당 분야의 경력과 비교하여 경력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경력의 내용과 수준을 남한의 해당분야 내용과 수준과 정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련 분야의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그리고 경력관련 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경력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경력분야의 신청을 받거나, 탈북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경력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경력을 선정한다. 경력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경력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북한 경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준에 관한 정보를 분석·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관계자를 경력심의위원회에 참석시킴으로써 기업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거리를 좁혀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2]는 앞서 언급한 경력확인 절차와 2단계로 나누어진 기업에서의 경력인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V-2]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 절차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은 경력심의위원회의 경력인정 사항을 취업 단계에서 해당 기업, 단체, 정부 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경력인정 사항은 취업시 보수,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내용, 그리고 직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한 기업, 단체, 정부 부처 등은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이들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력심의위원회는 정부부처(1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1인), 해당경력분야전문가(현장전문가, 학계인사 각 1인), 기업관계자(1인)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경력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내용과 절차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무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취업보호기간을 거친 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은 입직 초기부터 이들의 계속 고용여부를 평가하는 시점까지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참여 실적, 컴퓨터활용능력과 영어능력 등과 같은 기초직무수행능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고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근로자와 차별없이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때는 북한에서의 동일 및 유사직종 근무경력을 사내규정 및 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의 경우 동·서독 기본조약 '제 2조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조항에 바탕을 두고 통일조약 37조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대학졸업자격, 자격증 등을 모두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독에서의 근무경력을 서독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100% 인정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인정방법은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력인정방식은 경력의 불인정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계

기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력인정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취업보호기간 종료시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평가도구의 개발·보급은 그것이 북한이탈주민의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측에서 볼 때 평가도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관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평가도구에 근거하여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취업시 미리 이러한 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을 공지함으로써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할 평가도구의 개발·보급은 취업보호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군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특성상 경력인정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 군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한직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내용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경력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인정범위는 앞서 제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인정 조건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남한사회에서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원활한 직업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위한 기초조사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선정을 위해 1970년~1998년 사이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특히 1990년대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면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지의 내용은 북한의 전반적인 자격체제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개별자격의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자격·경력 인정실태와 그것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①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 후 남한 자격으로 인정, ②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 후 실기시험만을 실시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경력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경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초기 1~2년 유예기간을 두고 북한에서의 직업 경력을 일정 부분 인정받은 후 나

중에 자신의 경력을 재평가 받는 경력인정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나. 남북한의 자격체제

1) 남한의 자격체제

남한의 국가자격은 국가기술 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한의 국가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격응시조건은 학력요건과 실무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은 의료·보건분야 27개 직종, 전문사무분야 4개 직종, 해양 분야 15개 직종 등 총 120개 직종이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자격들은 대학에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시험에 전공 제한을 두고 있다.

2) 북한의 자격체제

북한의 자격은 크게 기사, 준기사, 기능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것은 응시자의 자격응시 요건 중 최소학력요건의 고려를 통해 구분된다. 기능, 준기사, 기사는 여러 단계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는 6~1급의 나누어져 있으나 종목에 따라 3~1급, 5~1급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기사의 자격급수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급수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자격의 경우는 단일 급수로 되어있다.

준기사 급수는 일반적으로 6~1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을 통해 나타난 준기사의 급수는 주로 단일급, 3~1급, 4~1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능 자격은 기사, 준기사 자격보다 더욱 급수가 세분화되어 최대 1~8급

까지 나누어져 있으나 자격의 수준은 기사, 준기사 자격과 같이 일정하게 되어있지 않고, 종목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자격은 검정방식으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시험은 특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작업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대체로 실제 작업을 통해 자격응시자의 현장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3)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남북한 자격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응시자격과 자격의 등급에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도 전문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준기사나 기사에 응시할 수 없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국가 자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만으로 모든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에 의해서 법률로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양하게 자격의 급수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의 자격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학력요건을 자격의 응시조건으로 고려하여 남한의 국가기술자격과 북한의 자격을 비교하면 남한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는 북한의 기능, 준기사, 기사와 동일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하는 자격은 없지만 기사 및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을 고려하면 각각의 최고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이 남한의 기술사와 기능장에 해당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격체제를 남한의 자격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두 체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북한의 학력·자격·경력 인정 실태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제법률을 통해서 남한의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학제나 교육시간, 의무교육기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육수준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999년 현재 학력 인정을 통해 7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남한에서 동일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 시험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격종목으로 요리사, 토목산업기사가 있다. 또한 북한의 운전수 자격의 경우 북한 취득 자격을 부분 인정하여 기능시험의 일부(코스시험)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의료분야의 경우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자격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력의 인정을 통해 응시자격만을 부여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들어온 직후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력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때 남한주민의 이력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의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구서독은 구동독의 학력·자격을 그대로 인정, 구서독에서 취득한 학력·자격과 동등하게 대우했다. 즉, 구서독과 구동독 간에 맺어진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가 인정한 학력이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들은 신연방주에서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았다. 대체로 독일은 자격, 학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인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법적 규정을 통해 구동독의 자격, 학력을 인정했다.

라. 북한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1) 자격인정방안

남북한자격의 연계 방법으로 ① 자격응시 조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북한의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 ② 남한의 기술사 자격은 인정자격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해당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 ③ 남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한하여 북한자격을 인정, ④ 단일체계의 기능자격은 전문학교 및 대학 졸업시 취득하는 등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자격의 등급(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으로 인정, ⑤ 남한 기능장 자격의 인정은 8단계 이상의 기능급수가 있는 북한 기능자격의 최고위 등급(7~8급)에 한하여 인정, ⑥ 단일급수의 기사, 준기사를 제외한 무급 자격은 남한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 등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 ⑦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의 인정은 북한자격의 응시자격과 검정내용의 비교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인정받는 등의 연계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②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 ③ 검정을 면제하고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방안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은 일정 기간의 자격관련 교육훈련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내용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시된 자격과 관련된 모든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제 3 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기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1999.6.15. 개정 예규 제425호)」의 제14조 ‘훈련기준의 내용’과 제 16조 ‘훈련과정별 훈련

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자격종목별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력인정방안

북한에서의 직장경력을 남한의 경력으로 인정할 때에는 입직 초기부터 최대 2년간(취업보호기간)의 경력 환산방법과 그 이후의 경력 환산방법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취업보호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경력인정 방법으로는 ①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보호기간 동안 북한근무 경력의 50%를 인정, ②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 근무 경력의 20%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 인정 수준은 남한 기업의 경력인정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현재 남한 기업은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전 직장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취업보호기간을 거친 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은 입직 초기부터 이들의 계속 고용여부를 평가하는 시점까지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참여실적, 컴퓨터 활용능력과 영어능력 등과 같은 기초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북한의 경력을 재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력인정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정부는 취업 보호기간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기업, 단체, 정부 부처 등의 이들의 취업처에 미리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책 제언

가. 기본방향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과 경력인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남북한의 사회·경제적인 체제 차이에 따른 자격 및 경력 내용과 수준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남북한은 사회·경제적인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운영하고 있는 자격체제, 수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력의 내용과 수준이 남북한 사회경제체제와 그 수준이 다르므로 북한의 것은 남한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차이는 50여 년 이상 분단된 채 남북한이 상이한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해온 결과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자격과 경력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 즉, 남북간의 이러한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북한 자격과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민족화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북한체제를 이탈한 사람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남한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직업은 경제적 소

득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이다.

- 따라서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여 남한
에서의 물질·인적 터전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우선적으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민족화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력인정시에는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
업, 단체, 정부부처의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제단체에서 북한의 경력을 인정할 때에는 북
한이탈주민과의 충분한 의사교환이 필요하다.
- 북한경력 인정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처의 관례와 내규를 존중하
는 자세를 지향해야 하며, 취업처는 북한이탈주민을 민족화합차원에서
수용하되 취업보호기간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와 같은 상호존중 및 이해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과 경력은 남한의 자격 및 경력과 동등하
게 취급되어야 한다.**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남한사회에서 인정되었을 경우는 해당 자격소
지자는 남한의 해당 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자격소지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모두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력인정부분도 자격의 인정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
한 자세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의 인정을 법제화하는 밑바탕이 되
어야만 자격과 경력의 인정이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고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

한 인정 자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배양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 자격 및 경력인정 방안은 통일 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연구결과에 의한 자격 및 경력인정방안은 통일 전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 통일 이후에 북한거주 근로자의 자격 및 경력인정문제는 통일 이후의 북한근로자의 경제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개선·보완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 언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진을 제안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관장하는 기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자격인정신청서는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어있다.
-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자격인정업무 관장기관은 자격인정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자격관련분야의 현장 및 학계전문가, 자격제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북한의 자격체계는 대체적으로 남한체계와 유사하여 북한의 자격을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하기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기능관련 자격의 경우 남한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는 자격종목이 있으며, 북한과 남한의 사회·경제체제, 내용, 수준이 다름에 따라 북한의 개별종목이 남한의 어떠한 종목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내용과 수준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남북한의 자격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훈련 및 검정을 면제한다.

둘째, 단기 교육 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한다.

셋째, 검정을 면제하여 자격을 인정한 후 취업보호기간 내에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 아울러 남한의 자격으로 인정된 북한자격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시 중요하게 고려되어 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자격관련법의 통합작업을 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통합법속에 북한취득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정·관리하기 위해서 경력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설치·운영한다.

- 공·사기업, 단체, 정부 부처에 취업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시 적절한 보수와 직책 결정을 위해서 북한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장근무경력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력, 자격과의 연관성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주요경력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남한 해당 분야의 경력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의 경력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경력 내용과 수준을 남한의 해당분야 내용과 수준과 정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련분야의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그리고 경력관련 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경력심의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즉,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경력분야의 신청을 받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탈북 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경력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경력을 선정하여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북한경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준에 관한 정보를 분석·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관계자를 경력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거리를 좁혀 기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경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시 해당 기업,

단체, 정부부처에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처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수와 수행해야할 직무에 내용과 직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법개정이 이후 시행될 취업보호제를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기업은 취업보호기간중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수결정을 위해 다음에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업, 단체, 정부부처는 경력심의위원회의 경력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둘째,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이나 취득한 자격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 경력의 20%를 인정한다.

-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을 심의하기 위한 경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첫째, 경력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심의위원들을 위촉하여야 하므로 분야별 적절한 인사의 선정을 위해 광범위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빈번하게 개최되어야 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를 관리·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 이러한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조직과 역할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통일부장관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의 학력, 경력, 자격소지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관련된 업무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한 정보가 학력, 경력, 자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관리·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취업보호기간 종료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제공한다.

- 취업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할 때 회사와 북한이탈주민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기간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관이 이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후 직업능력배양 노력 및 결과, 직무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러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계적인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이 결과는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도구는 우선 정부측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관측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평가도구에 근거하여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측에서 볼

때 취업시 미리 이러한 평가와 구체적인 평가도구가 존재함을 공지함으로써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평가도구의 개발·보급은 취업보호제의 내실있는 실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북한이탈주민의 기초 및 전문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들이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기초 및 전문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은 남한에 들어온 시점부터 취업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때 교육훈련의 성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 이때 우선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발적으로 기초 및 전문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참여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행정·재정적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경력환산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인정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북한의 경력을 남한의 경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기반을 획득하는 것이고 이것은 취업시 남한의 기업, 단체, 정부 부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경력인정의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경력인정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법률로 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구섭(1998),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 국가정보원(1998), 귀순자신원정보자료집, 국가정보원.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 김영수 외(1996),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통일연수원.
- 김영윤 외(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1998), <통일 후 남북한 단일노동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월간 북한 98. 2 제314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 _____ (1998), <통일에 따른 북한지역의 대량 실업문제와 독일의 경험>, 월간 북한 98. 1 제313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 김유배(1994), 남북한 경제교류와 인력문제, 노동경제논집 제17권.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종철 외(1996), 통일 후 북한대학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중태(199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현황과 정책방향, 국회인권포럼 제6회 정책심포지움 자료, 국회인권포럼.
- 남궁영(1996),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민족통일연구원.
- 박재윤 외(1992),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 북한연구소(1994), 북한총람,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 선한승(1995),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신성균 외(1996), 남북한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석홍(1997), **남북한 비교론**, 사람과 사람 출판사.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규환 외(1990), **북한의 고등교육체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상만(1994),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이윤호(1994), 남북경제교류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노동경제논집 제17권,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찬희 외(1997), **남북한 중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동호(1993),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북한노동력의 질에 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조정윤 외(1998).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홍택·이영선 편(1997),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최석진 외(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부(199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분야별 종합성과와 향후 과제**, (I), 통일부.

_____ (199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분야별 종합성과와 향후 과제**, (II), 통일부.

_____ (199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하나원 게시자료**, 통일부.

_____ (1991),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통일원.

_____ (1995), **남북한 경제지표**, 통일원.

_____ (1996), **북한경제통계집**, 통일원.

한국기계공업진흥회(1995), **북한 경제와 산업동향**,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노동연구원(1996), **독일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연구 - 독일통합 5년의 중간결산 -**, 한국노동연구원.

한만길 외(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_____ (1997), 통일시대의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기타 면담자료

북한이탈주민 면담조사자료, 1999. 6 ~ 7.
대북경협 사업체 기술담당자 면담내용 1999. 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사무관 면담내용, 1999. 7.
일반기업체 인사담당자 전화면담 내용, 1999. 7.

[부록 1] 면담지

본 면담지는 북한에서 취득하신 자격 및 경력을 남한의 자격 및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아시는 만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다음은 선생님께서 취득하신 자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빠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1.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기사, 준기사, 기능, 운전면허 등)과 자격을 수여한 기관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00기사 0급, 00준기사 0급, 00기능 0급, 등등)
 - ①
 - ②
 - ③

2. 갖고 계신 북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졸업 및 수료 (예 : 공장대, 고등전문학교, 기능대, 등...)
 - 학교명
 - 교육기관 명
 - 기타
 - ② 현장경력 획득 후 시험에 합격 (예 : 채탄공 기능 자격 획득후 00광산에서 3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준기사 자격 취득 시험에 합격)

- 00사업소 00공장 00년 근무

3.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치신 교육내용이나 과정에서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① 교육내용(정치사상교육은 제외한 자격취득과 관련된 과목)

- 기본과목
- 전공과목
- 실습

② 교육시간(비율)

- 기본과목
- 전공과목
- 실습

③ 교육수준(학교수준)

④ 현장실습

- 내용
- 방법
- 수준

⑤ 현장경력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업무수준(직위포함)

4. 교육훈련 과정 중 거치신 시험(필기시험, 논문시험, 실기시험, 졸업시험 등)이나 기타 자격 취득을 위해서 치르신 과정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 ① 필기시험
- ② 논문시험
- ③ 졸업시험
- ④ 자격증 취득 시험
- ⑤ 실기시험

5. 4번의 질문과 관련하여 응시하신 시험이나 평가 과정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시험과목명
- ② 시험과목수
- ③ 시험 내용 및 수준(정규학제에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④ 평가방법(필기의 경우 필답시험의 문제유형, 시험의 형태, 실기의 경우 실기 시험의 내용)

6. 북한에서 상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예 : 현장경력, 학력, 자격 등)

7. 북한에서 자격 취득 후 상급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교육의 종류
 - 교육의 내용
 - 교육의 수준

② 없다

8. 자격 취득을 위해 응시하신 시험(평가)의 내용이 북한에서 실제로 하셨던 일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연관성이 많다
- ② 비교적 연관성이 많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연관성이 있다
- ⑤ 전혀 연관성이 없다

9. 취득하신 자격이 실제 직업활동에서 얼마만큼 유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매우 유용하다
- ② 비교적 유용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유용하다
- ⑤ 전혀 유용하지 않다

10. 북한에서 직업생활을 하실 때 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① 보수
- ② 승진의 기회
- ③ 상위단계 교육훈련 기회의 부여
- ④ 기타

11. 현재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과 얼마나 유사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 ③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 ④ 기타

()

다음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인정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다음은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 ① 북한에서의 취득한 모든 자격을 남한에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 ②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③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후 부분 검정(면접, 실기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④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후 남한주민과 동일한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⑤ 기타 의견()

13. 북한에서 취득한 경력을 남한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남한에서 북한이탈 전에 근무하던 직종과 동일한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을 남한에서 얼마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 10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7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5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3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 ()
- 기타 의견 ()

② 남한에서 북한이탈 전에 근무하던 직종과 다른 직업분야에 종사할 경우 북한에서의 경력을 남한에서 얼마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십시오.

- 10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7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5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30 % 인정해 주어야 한다()
-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 ()
- 기타 의견 ()

14. 북한취득 자격 및 경력 인정에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면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 시나리오

북한이탈주민 중 00씨의 면담조사를 통해 드러난 그의 경력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인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단 00씨는 남한에서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00씨의 북한경력

69 - 74 : 고등중학교 졸업

74 - 85 : 북한군으로 근무

86 - 89 : 00 사업소 용접공으로 근무

90 - 94 : 00 목공소에서 목공기능공으로 근무

북한자격 취득사항

- 용접공 4급

- 목공기능공 2급

자격인정

첫째, 00씨가 북한에서 취득한 용접공 및 목공기능공 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00씨는 우선 통일부에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둘째,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통일부는 신청한 자격이 국가기술자격
이므로 자격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
송부한다.

셋째,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용접과 목공 관련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인정을 신
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인정할 남한자격을 선
정하고 이를 인정할 방법을 선택한다.

넷째, 따라서 자격심의위원회는 용접공 4급을 용접기능사로, 목공기능공 2
급을 목재가공기능사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접기능사의 경우는
단기교육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고, 목재가공기능사는 교육훈련 및 검
정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섯째, 자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공단은 인정한 자격종목을
통일부에 통보하고, 통일부는 이를 다시 자격신청자에게 통지하여 공
단에서 용접기능사와 목재가공기능사 자격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다.

□ 취업시 경력인정

첫째, 00씨가 남한 00자동차회사의 용접분야에 취업하려고 할 때 보수 및
직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북한경력에 관한 내용증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00씨는 경력인정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한다.

둘째, 통일부는 학계, 산업체의 용접전문가로 구성된 경력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 00씨와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주로 했던 용접업무, 용접종류
(가스, 전기 등), 용접의 수준 등을 조사한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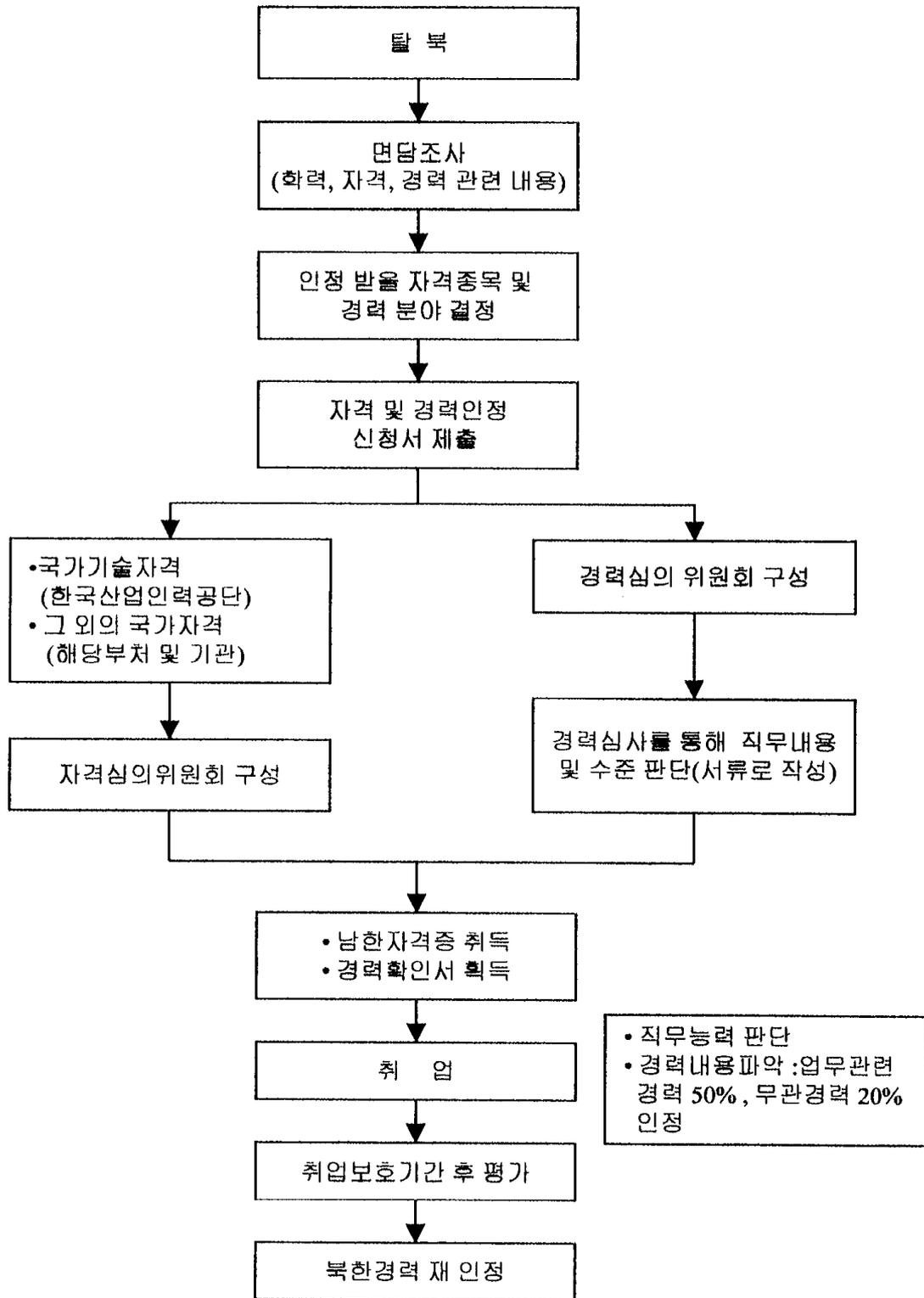
한의 용접분야와 비교하여 북한경력에 대한 내용과 수준에 관한 정보를 분석·정리한다.

셋째, 경력심의 결과가 00씨가 취업하고자 하는 00자동차 회사에 제출되면,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00씨의 용접분야의 능력을 평가하여 채용을 결정한다. 이때 보수, 수행해야할 직무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등이 정해진다.

넷째, 경력인정은 북한에서 근무한 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의 경력은 50%, 그 외의 경력은 20%를 인정받는다. 즉, 용접분야 경력 4년의 50%인 2년을, 목공경력 5년의 20%인 1년을 인정받아 전체 3년 경력자로 인정받는다. 이때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경력인정률을 조절할 수 있다.

다섯째, 여기에서 북한군으로 근무한 10년의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북한군내에서 용접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이것이 경력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을 때에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섯째, 취업보호기간이 끝난 후 회사는 00씨의 용접관련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계속 채용을 결정한 후, 00씨의 업무수행능력에 바탕을 두고 00씨의 용접분야의 북한 경력을 남한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최대한 인정한다. 이때 역시 회사 내규를 고려하여 경력인정률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인정 시나리오

[부록 3]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및 그 외의 국가자격(38종목)

면담조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북한자격을 남한자격으로 인정할 때 인정 가능한 남한자격의 내용을 검정기준, 시험면제사항, 검정시험 및 내용, 출제 경향 등을 중심으로 정리·제시하였다.

I. 국가기술자격

1. 기능사

1-1. 건축미장기능사

가. 검정기준

미장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미장작업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 1) 필기시험 : 없음
-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미장작업 | 각 부분 마름작업 |

라. 출제경향

- 벽, 바닥 등 바르기 작업시험이 부과되며, 실기시험 문제는 도면이 공개되어 있음

- 작업순서는 도면의 이해 → 바탕시공 → 몰탈을 바름(곡선 등)

1-2. 무선통신기능사

가. 검정기준

무선통신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유지·보수·정비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전자공학 | 직류회로, 교류회로, 자기현상, 반도체, 증폭회로, 발진회로, 변복조회로, 디지털회로 |
| 전자계산기 일반 | 전자계산기의 개요, 전자계산기의 기본구성과 기능, 자료의 표현, 논리회로, 기본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
| 무선통신일반 | 송·수신기 및 부속기기, 안테나 및 급전선, 위성통신, 무선기기기의 측정시험 |
| 무선설비기준 | 국내전파법에 규정한 설비기준, 무선통신설비의 공사에 관한 기초사항, 무선설비 운용상 필요한 통신보안 |

2) 실기시험 : 작업형(3시간 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무선통신설비 작업 | 무선설비의 조립, 무선설비의 시험, 무선설비의 고장수리, 무선설비의 설치동작시험 |

라. 출제경향

회로구성 및 조립, 고장수리 및 동작시험 평가

1-3. 미용사

가. 검정기준

미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미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미용이론 | 미용총론, 미용의 역사, 미용용구, 세발 및 염발, 헤어커트, 퍼머넨트 웨이브, 헤어세팅, 두부처리술, 미용사의 맛사지 기술, 미안술, 화장술, 기타 미용술 |
| 공중보건학 | 공중보건 |

| | |
|--------|--|
| 소독학 | 소독학 |
| 피부학 | 피부 및 피부부속기관의 구조 및 기능, 피부 및 피부부속기관의 보건과 위생, 피부영양, 피부질환, 향장품 |
| 공중위생법규 | 이·미용에 관한 사항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40분), 작업(1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미용작업 | 커트, 퍼머넨트 웨이브, 세팅, 화장 |

라. 출제경향

커트, 퍼머, 세팅, 화장 등 미용작업의 숙련도 및 정확성 평가

1-4. 보일러취급기능사

가. 검정기준

보일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작·운전·보수·정비 등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보일러 설비 및 구조 | 열 및 증기, 보일러의 종류 및 특성, 보일러 부속장치 및 부속품, 보일러효율 및 열정산, 연료 및 연소장치, 보일러 자동제어 |
| 보일러 시공, 취급 및 안전관리 | 난방부호 및 난방설비, 보일러시공 기준, 보일러 취급, 보일러안전관리 |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계 법규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2) 실기시험 : 작업형(20분 정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보일러 취급작업 | 보일러 운전 및 취급, 보일러 주요 부속설비의 취급, 보일러 기타 부속설비의 취급 |

라. 출제경향

보일러운전 및 취급에 관하여 실제 보일러 앞에서 시험관 지시에 의거 조작, 문답 등으로 평가

1-5. 불도저운전기능사

가. 검정기준

불도저 운전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 기관, 전기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작업장치의 구조·기능 및 점검 |
| 유압일반 | 유압유와 유압기기의 구조 및 점검 |
| 건설기계관리 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검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및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 관리법규의 별칙, 건설기계의 도로통행방법 |

2) 실기시험 : 작업형(5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불도저 운전작업 | 작업전과 작업후의 점검, 작업중의 점검, 기관회전상태, 조작상태, 작업능률상태, 안전성 |

라. 출제경향

불도저 운전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전·후 점검과 안전성, 작업능률 및 기관회전상태 평가

1-6. 사진기능사

가. 검정기준

사진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피사체의 종류에 따라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현상, 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사진일반 | 사진의 역사, 광학의 기초, 색채의 기초, 컬러사진 기초, 안전관리 |
| 사진재료 및 현상 | 감광재료, 현상약품, 표백정착약품, 현상, 사진처리, 인화 |
| 사진기계 및 촬영 | 카메라, 렌즈, 필터, 셔터, 흑백·컬러용 확대기 및 프린터, 광원용 램프, 카메라보조기구, 노출계, 플래쉬 촬영, 조명광원, 촬영조건의 결정, 사진기계의 취급 및 보관 |

2) 실기시험 : 작업형(2시간 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사진 및 현상작업 | 사진촬영작업(흑백, 컬러사진), 필름현상작업, 인화기 확대작업, 인화지 현상작업, 수정작업 |

라. 출제기준

사진촬영, 현상, 인화작업

1-7. 양복기능사

가. 검정기준

양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양복제작법 | 본뜨기 및 마름질, 체형과 치수재기, 가공 및 보정, 봉제, 봉제품의 분해 |
| 섬유재료 | 섬유의 분류 및 특성, 섬유의 외형, 실의 특성 |
| 복장미학일반 | 색의 분류와 성질 및 혼합, 색의 지각적인 효과, 색의 감정적인 효과, 생활과 색채, 디자인의 요소 및 분석, 의장 |
| 피복일반 | 직물의 구성 및 조직, 일반직물 및 특수직물, 피복의 성능, 직물의 가공 및 특성, 피복손질 및 관리, 염색일반 |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양복제작 작업 | 체형별 치수재기, 형지제도 및 형지놓기, 재단 및 가봉, 바느질 작업, 단추구멍처리 및 달기, 봉제뒤처리, 다림질 방법 |

라. 출제경향

재단지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을 떼서, 형지 마름질과 재봉작업으로 작품 제작

1-8. 양장기능사

가. 검정기준

양장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양장제작법 | 본뜨기 및 마름질, 체형과 치수재기, 가공 및 보정, 봉제, 봉제품의 분해 |

| | |
|--------|--|
| 섬유재료 | 섬유의 분류 및 특성, 섬유의 외형, 실의 특성 |
| 복장미학일반 | 색의 분류와 성질 및 혼합, 색의 지각적인 효과, 색의 감정적인 효과, 생활과 색채, 디자인의 요소 및 분석, 의장 |
| 피복일반 | 직물의 구성 및 조직, 일반직물 및 특수직물, 피복의 성능, 직물의 가공 및 특성, 피복손질 및 관리, 염색일반 |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양장제작 작업 | 체형별 치수재기, 형지제도 및 형지놓기, 재단 및 가봉, 바느질 작업, 단추구멍처리 및 달기, 봉제뒤처리, 다림질 방법 |

라. 출제경향

양장제작작업이 부과되며, 치수재기, 형지놓기, 재단 및 가봉, 바느질작업, 단추구멍작업, 다림질방법의 순서로 진행

1-9. 영사기능사

가. 검정기준

영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일반 | 직류, 전기저항, 전기와 자기, 교류, 전력 |
| 렌지 및 광원 | 빛의 성질, 거울과 렌즈, 영사용 전극재료, 광원의 측정 |
| 증폭기 및 녹음재생 | 증폭기, 반도체, 녹음재생 |
|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 | 영화의 원리, 영사기의 구조, 램프하우스, 사운드헤드, 필름의 원리, 필름의 구성 |

2) 실기시험 : 작업형(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영사작업 | 영사준비, 영사조작, 응급조치 |

라. 출제경향

영사기기 조작, 필름점검, 수리작업 및 상영관 설계

- 영사필름의 삽입과 잇기 및 감기와 영사기의 조작상태 및 각종 응급조치 사항

1-10. 용접(전기, 가스, 특수) 기능사

가. 검정기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용접일반 | 용접의 원리, 피복아크 용접, 아크절단, 가스용접,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 특수아크용접, 납땜법 및 각종 금속의 용접, 용접시공, 작업안전 |
| 용접재료 | 용접재료 |
| 기계제도 (비절삭부분) | 제도통칙 등, KS 도시기호, 도면해독 |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용접작업 | 아크용접에 소요되는 기능 |
| 가스용접작업 | 가스용접 및 절단에 소요되는 기능 |
| 특수용접작업 | 특수용접작업에 소요되는 기능 |

라. 출제경향

각각 전기·가스용접 및 CO₂ 용접, TIG 용접을 하되 용접 시험편 외관의 폭, 파형, 높이 단락의 일정성, 결합, 용접자세에 유의할 것

1-11. 전기공사기능사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이론 | 정전기와 콘덴서,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장, 전자력과 전자유도, 직류회로, 교류회로,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 전자회로 |
| 전기공사 | 배선재료 및 공구, 전선접속, 옥내배선공사, 전선 및 기계기구의 보안공사, 가공인 입선 및 배선선공사, 고압 및 저압 배전관 공사, 위험장소의 공사, 전기응용 시설공사 |
| 전력 | 수력발전, 기력발전, 송배전 |

2) 실기시험 : 작업형(6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공사 작업 | 작업종류에 알맞은 공구를 선정, 전선접속,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각종 관공사를 능숙하게 하여야함, 전등설비에 대한 공사, 전기기기 배선공사, 옥외공사, 자동제어 배선공사, 안전 |

라 출제경향

- 전기공사배선도를 작성하여 주어진 재료를 도면에 의거 공장배선, 옥내 배선, 동력배선 작업
- 공사방법은 케이블공사, PE관 공사, 금속관공사, PVC관 공사, 노출공사 등

1-12. 전기기기기능사

가. 검정기준

전기기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이론 | 정전기와 콘덴서,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장, 전자력과 전자유도, 직류회로, 교류회로,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 전자회로 |
| 전기기기 | 변압기, 직류기, 유도전동기, 동기기, 정류기 및 제어기기, 보호기 |
| 자동제어 | 사이퀀스 제어, 되먹임 제어 |

2) 실기시험 : 작업형(6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기기 작업 | 전기기기작업에 사용되는 설비기기 및 전기계기를 사용, 전기기기의 고장종류와 고장개소를 정확히 발견하고 원인 규명, 전기기기의 특성시험을 정확히 수행, 전기기기의 작업에 필요한 도면 작성 또는 판독 및 도면을 보고 작업을 수행, 전기기기의 제작·검서·설치·운전 및 수리작업을 할 수 있어야함 |

라. 출제경향

주어진 도면과 재료를 사용하여 유도전동기 권선 및 유도전동기 제어장치 조립

1-13. 통신기기기능사

가. 검정기준

통신기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전자공학 | 직류회로, 교류회로, 자기현상, 반도체, 증폭회로, 발진회로, 변복조회로, 디지털회로 |
| 전자계산기 일반 | 전자계산기의 개요, 전자계산기의 기본구성과 기능, 자료의 표현, 논리회로, 기본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
| 통신기기일반 | 통신기초이론, 단말기기, 교환기기, 트래픽이론, 다중화기술, 통신망, 통신측정 |
| 통신기기설비 기준 | 통신법령기초, 통신사업의 경영, 기술기준, 공사 및 시설기준, 보전 및 안전기준 |

2) 실기시험 : 작업형(6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통신기기설비 작업 | 통신기기설비의 조립, 통신기기설비의 측정·시험·고장수리, 통신기기설비의 설치 및 동작시험 |

라. 출제경향

통신기기설비의 조립, 측정, 시험, 고장수리 및 동작시험 능력

1-14. 편물기능사

가. 검정기준

편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및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

- 실업계고등학교나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 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섬유일반 | 섬유의 분류, 섬유의 성질 |
| 도안과 배색 |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색채, 디자인 |
| 편물일반 | 편물개론, 편물제도, 수편법, 편물기 |
| 편물재료 | 편물재료, 편물조직 |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수편물작업 | 제도, 편법 |
| 기계편물작업 | 수편기 조작, 제도, 편법 |

라. 출제경향

기계편물작업 또는 수편물작업 실시

2. 산업기사

2-1. 열관리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열관리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
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개요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연소공학 | 연료의 종류와 특성, 연료의 관리, 연소기초계산, 연소· 통풍·집진장치 및 방법, 오염방지 |
| 열역학 | 열역학제법칙, 열역학적 특성, 증기의 성질, 증기 및 가스 사이클 |
| 계측공학 | 온도계측, 유량계측, 압력계측, 액면계측, 가스의 분석 및 측정, 제어회로 및 장치 |
| 열설비재료 및 설계 | 요로, 로재·단열재 및 보온재, 배관, 열설비의 특성, 열공 학적 설계, 전열계산, 안전관리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1시간), 작업(1시간 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열관리실무 | 열설비의 설계, 연소관련 계산, 관련 사이클 및 열효율, 열정산, 계측기기운전 및 장치, 로재·단열재 및 보온재, 에너지의 효율적이용 및 진단 |

라. 출제경향

측정 및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러 측정 및 열정산, 에너지분석 작업
이 부과됨

2-2. 무선통신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디지털 전자회로 | 반도체 이론, 전원이론, 증폭회로, 발진회로, 변복조회로, 펄스회로, 논리회로, 응용논리회로 |
| 무선통신기기 | 송신기, 수신기, 전원설비, 무선통신방식, 무선기기의 측정시험, 위성통신 |
| 안테나공학 | 송·수신기 및 부속기기, 안테나 및 급전선, 위성통신, 무선기기의 측정시험 |
|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 전자계산기 일반, 무선설비 기준 |

2) 실기시험 : 작업형(4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무선통신실무 | 무선설비의 회로조립, 무선설비의 회로시험, 무선설비의 고장수리, 무선설비의 동작시험 |

라. 출제경향

회로구성 및 조립, 고장수리 및 동작시험 평가

2-3. 영사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영사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일반 | 직류, 전기저항, 전기와 자기, 교류, 전력 |
| 렌지 및 광원 | 빛의 성질, 거울과 렌즈, 영사용 전극재료, 광원의 측정 |
| 증폭기 및 녹음재생 | 증폭기, 반도체, 녹음재생 |
| 영사기와 필름의 구조원리 | 영화의 원리, 영사기의 구조, 램프하우스, 사운드헤드, 필름의 원리, 필름의 구성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40분, 작업 : 1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영사기조작, 수리 및 영사작업 | 영사준비, 영사조작, 응급조치, 수리, 상영관 설계 |

라. 출제경향

- 영사기기 조작, 필름점검, 수리작업 및 상영관 설계
- 영사필름의 삽입과 잇기 및 감기와 영사기의 조작상태 및 각종 응급조치 사항

2-4. 전기공사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응용 | 광원전기조명, 전열방식, 전동력 응용, 전력용 반도체, 전지 및 전기화학, 전기철도, 자동제어의 개념 |
| 전력공학 | 발변전 일반, 송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송배전 방식, 계통보호 방식 및 설비, 옥내배선 일반, 배전반 및 제어기기의 종류와 특성, 개폐기류의 종류와 특성 |
| 전기기기 | 직류기, 동기기, 정류기, 변압기, 유도기기, 교류정류자기, 전압조정기, 제어용기기, 전기기기의 보호방식 |
| 회로이론 | 직류회로, 정현파교류, 왜형파 교류, 다상교류, 대칭좌표법, 4단자 및 2단자망, 라플라스변화, 회로의 전달함수, 과도현상 |
| 전기설비기술기준 | 기술기준총칙, 전기의 발전 및 운용장소의 전기시설, 전선로,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전기철도 등에 관한 사항 |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도면판도 및 작성,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 접속공사, 배전선로, 조명 및 전열 설비, 동력설비, 간선 및 분기회로, 전력설비, 예비전원 설비, 방재설비, 견적, 시험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2-5. 전기기기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기기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응용 | 광원전기조명, 전열방식, 전동력 응용, 전력용 반도체, 전지 및 전기화학, 전기철도, 자동제어의 개념 |
| 전기기기 | 직류기, 동기기, 정류기, 변압기, 유도기기, 교류정류자기, 전압조정기, 제어용기기, 전기기기의 보호방식 |
| 회로이론 | 직류회로, 정현파교류, 왜형파 교류, 다상교류, 대칭좌표법, 4단자 및 2단자망, 라플라스변화, 회로의 전달함수, 과도현상 |

| | |
|------|--|
| 전력전자 | 반도체의 구조 및 원리, 다이리스터의 구조 및 원리, 정류회로, 게이트트리거특성과 회로, 다이리스터의 현오프와 스위치회로, 다이리스터의 직병렬 접속, 제어정류회로, 직류전력제어, 인버터회로, 사이크로converter, 전동기제어, 직류기, 동기기, 정류기, 변압기, 유도기 |
| 전자기학 | 진공중 정전계, 전계의 특수해법, 전자유도 및 인덕턴스, 진공중도체계, 자계, 전자계, 유전체, 장성체와 자기회로 |

2) 실기시험 : 필답형(7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기기실무 | 전기기기작업에 사용되는 설비기기 및 전기계기를 사용, 전기기기의 고장종류와 고장개소를 정확히 발견하고 원인 규명, 전기기기의 특성시험을 정확히 수행, 전기기기의 작업에 필요한 도면 작성 또는 판독 및 도면을 보고 작업을 수행, 전기기기의 제작·검서·설치·운전 및 수리작업을 할 수 있어야함 |

라. 출제경향

주어진 도면과 재료를 사용하여 유도전동기 권선 및 유도전동기 제어장치 조립

2-6. 양복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양복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양복제작법 | 본뜨기 및 마름질, 체형과 치수재기, 가공 및 보정, 봉제, 봉제품의 분해 |
| 섬유재료 | 섬유의 분류 및 특성, 섬유의 외형, 실의 특성 |
| 복장미학 | 색의 분류와 성질 및 혼합, 색의 지각적인 효과, 색의 감정적인 효과, 생활과 색채, 디자인의 요소 및 분석, 의장 |
| 피복환경 | 직물의 구성 및 조직, 일반직물 및 특수직물, 피복의 성능, 직물의 가공 및 특성, 피복손질 및 관리, 염색일반 |

2) 실기시험 : 작업형(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양복구성 및 제작 | 체형별 치수재기, 형지제도 및 형지놓기, 재단 및 가봉, 바느질 작업, 단추구멍처리 및 달기, 봉제뒤처리, 다림질 방법 |

라. 출제경향

재단지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을 떠서, 형지 마름질과 재봉작업으로 작품 제작

2-7. 용접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용접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재료역학 | 현장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 |
| 용접야금 | 용접야금 기초, 액상 및 응고야금, 고상야금, 용접재료 선택과 관리 |
| 용접구조설계 | 용접설계, 용접시공 및 결함, 용접성 시험 |
|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 전기아크용접 및 가스용접, 기타 용접 및 용접의 자동화, 안전관리 |

2) 실기시험 : 작업형(2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용접실무 | 금속의 가공 및 절단, 가스 및 아크용접(1-9mm), 특수 및 기타용접(1-9mm), 용접재료의 시험 및 검사 |

라. 출제경향

과제에서 제사한 도면대로 전기, CO₂ 용접, TIG 용접작업

2-8. 열차조작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열차조작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열차운전취급 | 운전, 폐색 및 조작, 신호 및 조작, 사고조치 |
| 여객운송절차 | 승차권, 운임 및 요금, 부대업무 |
| 화물취급 | 화물취급, 운임 및 요금 |
| 수송절차 | 화차, 수송 |
| 수·소화물 운송취급 | 수송화물의 취급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1시간, 작업 : 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열차조정실무 | 입환작업, 보안장치 |

라. 출제경향

열차조작실무능력과 고장조치능력

2-9. 농업기계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농업기계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농업기계 공작법 | 수가공, 측정, 절삭가공, 비절삭가공, 기계조립 및 정비작업 |
| 농업기계요소 | 기계요소 기초, 체결용 요소, 전동용 요소, 제어용 요소 및 기타요소 |
| 농업기계학 | 경운, 정지기계, 시비, 파종, 이식기, 유성 및 관리용 기계, 수확기계, 농산물의 물리적 특성, 제조가공 및 취급, 건조기 및 저장시설, 기타 농업기계 |
| 농업동력학 | 전동기, 내연기관, 트랙터 및 경운기 |

2) 실기시험 : 작업형(3시간 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농기계 정비작업 | 농용기관정비, 동력경운기 및 승용트랙터, 육성관리용 기계, 수확기계 및 건조기계, 농업기계 전기 및 전자장치 |

라. 출제경향

- 기관 및 경운기부분 정비 및 점검
- 트랙터부분 정비 및 점검

2-10. 시설원예 산업기사

가. 검정기준

시설원예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과 경영, 채소원예, 과수원예, 화훼원예 |
| 시설원예학 | 시설원예 개요, 원예시설의 구조 및 설계, 자재의 종류 및 특성, 시설내 작물생산과 환경, 시설내 환경특성과 재배관리, 시설내 생리장해 및 병충해, 시설원예용 기기, 무토양 재배, 시설원예의 신기술 |
| 시설원예환경 조절공학 | 시설원예 환경조절 개요, 시설원예 생산에 관여하는 환경요인, 시설원예에 관련된 환경물리, 환경계측, 생체정보계측, 환경조절기법, 시설내의 환경조절, 시설원예의 환경조절의 신기술 |
| 작물생리학 | 작물의 수분생리, 작물의 영양생리, 작물체내 대사작용, 종자와 발아생리, 작물의 생장생리, 작물의 개화생리, 작물의 결실 및 결과생리, 작물의 생육과 이상 기상 |

2) 실기시험 : 작업형(3시간 3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시설원예 실무 | 원예시설의 설계, 시설자재의 특성, 농용기관정비, 동력경운기 및 승용트랙터, 육성관리용 기계, 수확기계 및 건조기계, 농업기계 전기 및 전자장치 |

라. 출제경향

- 기관 및 경운기부분 정비 및 점검
- 트랙터부분 정비 및 점검

3. 기사

3-1. 건축기사

가. 검정기준

건축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건축계획 | 건축사, 주거건축계획, 상업건축계획, 공공문화건축계획, 기타건축물계획 |
| 건축시공 | 건축시공기술, 건축재료, 건축적산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
| 건축설비 | 환경계획원론, 전기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승강설비 |
| 건축관계법규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

2) 실기시험 : 필답형(3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건축시공실무 | 건축시공에 관한 사항, 공정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적산에 물량산출에 관한 실무사항, 품질관리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3-2. 공업화학기사

가. 검정기준

공업화학 제품·제조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화공열역학 | 열역학 기초, 유체의 압력·부피·온도 관계, 열역학의 제법칙, 열역학계의 특징, 상 및 화학평형 |
| 화학공업양론 | 화공양론 기초, 물질의 상태,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
| 단위조작 | 유동, 열전달, 증발, 증류, 추출, 흡수, 건조, 분쇄 및 혼합 |
| 유기공업화학 | 단위반응, 유지 및 도료, 염료공업 및 유기약품, 석유화학, 수지 및 고분자 |
| 무기공업화학 | 무기공업화학의 개요, 산·알칼리공업, 암모니아 및 비료공업, 금속재료공업, 전지 및 전기화학공업, 반도체 공정기술, 무기화학공업과 환경 |
| 분석화학 | 분석기초, 정성분석, 정량분석, 기기분석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2시간, 작업 : 4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화학제품제조 실무 | 유기화학공업 실험 및 계산, 무기화학공업 실험 및 계산, 계측 및 단위 조작 |

라. 출제경향

화학제품제조, 안전사고예방, 기기의 작동유무확인, 기기측정, 데이터해석 등의 작업내용을 통해 점검능력, 기기조작에 대한 숙련도, 능률성, 안정성 평가

3-3. 용접기사

가. 검정기준

용접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기계제작법 | 비절삭가공, 절삭가공, 열처리·금속표면처리 및 용접, 특수가공 및 수기가공 |
| 재료역학 | 현장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 |
| 용접야금 | 용접야금 기초, 액상 및 응고야금, 고상야금, 용접재료 선택과 관리 |

| | |
|-------------|---|
| 용접구조설계 | 용접설계, 용접시공 및 결함, 용접성 시험 |
|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 용접의 개요 및 원리, 피복아크용법 및 용접의 기계화 및 자동화, 안전관리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2시간, 작업 : 50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용접실무 | 재료시험, 용접성 시험, 용접구조물의 치수결정, 비파괴시험, 용접실시(수동, 자동) |

라. 출제경향

용접에 관한 설계와 제도를 완성하고 비용계산, 재료준비, 용접작업을 하여 작품완성

3-4. 의류기사

가. 검정기준

의류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피복재료학 | 섬유의 종류 및 특성, 실의 종류와 특성, 직물의 종류와 특성, 염색과 가공 |

| | |
|-------------------|------------------------------------|
| 피복환경학 | 피복과 인체, 실의 종류와 특성, 피복의 위생, 피복의 기능복 |
| 피복설계학 | 디자인, 의복설계, 패턴의 제작 및 변형, 재단 및 바느질 |
| 봉제과학 | 봉제준비, 봉제, 가공, 생산관 |
| 섬유제품시험법 및 품질관리 | 물리적 시험, 화학적 시험, 치수와 품질관리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1시간 30분, 작업 : 5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피복과학, 피복설계 및 제작실무 | 피복설계, 봉제실무, 피복관리 |

라. 출제경향

피복설계 및 제작업무를 평가하며, 시험진행순서는 디자인, 작업지시서작성, 제도 및 재단, 가봉, 섬유감별로 진행

3-5. 전기공사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기초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력공학 | 발변전 일반, 송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송배전 방식, 계통보호 방식 및 설비, 옥내배선 일반, 배전반 및 제어기기의 종류와 특성, 개폐기류의 종류와 특성 |
| 전기기기 | 직류기, 동기기, 정류기, 변압기, 유도기기, 교류정류자기, 전압조정기, 제어용기기, |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 전기응용 : 광원 및 전기조명, 전열방식, 전동력 응용, 전력용 반도체, 전지 및 전기화학, 전기철도 공사재료 : 전선 및 케이블, 애자 및 애관, 전선관 및 덕트류, 배전 및 분전함, 배선기구 및 접속재료, 일반조명기구, 전기기기, 전지 및 축전지, 피뢰기, 피뢰침, 접지배료, 지지물, 장수재료 |
|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 회로이론 : 직류회로, 정현파교류, 왜형파 교류, 다상교류, 대칭좌표법, 4단자 및 2단자망, 라플라스변화, 회로의 전달함수, 과도현상 제어공학 : 자동제어계의 요소 및 구성, 블록선도와 신호흐름선도, 상태공간해석, 정상오차와 주파수 응답, 안정도 판별법, 근궤적과 자동제어의 보상, 샘플치 제어, 시이퀀스제어 |
| 전기설비기술 기준 | 기술기준총칙, 전기의 발전 및 운용장소의 전기시설, 전선로,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전기철도 등에 관한 사항 |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도면판도 및 작성,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 접속공사, 배전선로, 조명 및 전열 설비, 동력설비, 간선 및 분기회로, 전력설비, 예비전원 설비, 방재설비, 견적, 시험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3-6. 전기철도기사

가. 검정기준

전기철도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채종설계·종자검사·종자보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철도공학 | 전기철도의 개요, 급전방식 및 급전계통, 전철 변전설비, 전차선로의 구성 및 방식, 가공전차선로, 강체전차선로, 잔차선로의 제특성 및 제영향, 계통보호방식 및 설비 |
| 전기철도 구조물 공학 | 전기철도구조물의 개요, 힘과 구조물, 응력도와 변형도, 단면의 성질, 철(강) 및 콘크리트 구조물, 애자류 및 전선류, 안전 및 보호 구조물, 구조물의 설계 및 설비, 전철주의 구조·원리 및 특성 |
| 전기자기학 | 진공 중 정전계, 진공 중 도체계, 유전체, 전계의 특수해법 및 전류, 자계, 자성체와 자기회로, 전자유도 및 인덕턴스, 전자계 |
| 전력공학 | 발전변 일반, 송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송배전방식과 그 설비 및 운용, 계통보호방식 및 설비, 옥내배선일반, 배전반 및 제어기기의 종류와 특성, 개폐기류의 종류와 특성 |

2) 실기시험 : 작업형(3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철도실무 | 전기철도설비 설계, 전기철도설비작업, 전기철도설비운용 관리, 전기철도설비의 유지보수 및 시험점검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3-7. 종자기사

가. 검정기준

종자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채종설계·종자검사·종자보 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종자생산학 | 종자의 발달, 채종, 종자의 관리, 종자의 검사 |
| 식물육종학 | 육종의 기초, 변이, 생식, 유전, 육종방법 특성 및 성능의 검정방법, 신품종의 유지·증식·보급, 생명공학 기술이용 |
| 재배원론 | 작물재배의 분류, 작물의 재배환경, 작물품종의 재배적 특성, 작물의 내적균형 및 기초생리, 작물재배기술, 작물의재배 |
| 식물보호학 | 작물의 보호의 개념, 식물의 병해, 식물해충, 잡초, 농약 |
| 종자관련 법규 | 종자관련법규체계 및 정의, 품종보호제도, 국가품종등록, 종자보증, 종자유통, 벌칙 |

2) 실기시험 : 복합형(필답 : 1시간 30분, 작업 : 3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종자생사실무 | 종자의 구조와 발아, 육묘생산, 육종 및 채종기술, 종자검사, 종자 산업법 |

라. 출제경향

종자식별검사, 유전적 순도계산 및 제용작업 등

3-8. 토목기사

가. 검정기준

토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채종설계·종자검사·종자보종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응용역학 | 역학적인 개념 및 건설구조물의 해석 |
| 측량학 | 다가 및 삼각측량, 수준·지형·평판 및 시거 측량, 면적·체적·노선·하천 측량, 사진측량·측량 및 측지학 일반사항 |
| 수리학 | 흐름의 원리, 관수로, 개수로, 지하수, 수문학 |
|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구조 |

| | |
|---------|--|
| 토질 및 기초 | 토질역학, 기초공학 |
| 상하수도 공학 | 상수도시설계획, 상수관로 시설, 정수장 시설, 하수도 시설 계획, 하수관로 시설, 하수처리장 시설 |

2) 실기시험 : 필답형(3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토목설계 및 시공실무 | 토목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토목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토목시공에 따른 공정 및 품질관리, 옹벽·슬래브·암거기초·교각·도로부대 시설물 등 도면의 물량산출에 관한 사항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4. 기능장

4-1. 용접기능장

가. 검정기준

용접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없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용접법, 용접설계시공, 용접공학, 용접자동화, 용접검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용접공학, 용접재료, 용접설계시공, 용접자동화, 용접검사(시험), 공업경영 |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용접실무 | 용접실무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4-2. 전기공사기능장

가. 검정기준

전기공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없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이론, 전력전자, 보호계전시스템기술,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전기이론, 전력전자, 보호계전시스템기술,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공업경영 |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공사 실무 | 도면판도 및 작성,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 접속공사, 배전선로, 조명 및 전열 설비, 동력설비, 간선 및 분기회로, 전력설비, 예비전원 설비, 시험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4-3. 전기기기기능장

가. 검정기준

전기기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나. 시험면제사항

없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1)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공학,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전기이론, 전력전자, 전기기기, 디지털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공업경영 |

2) 실기시험 : 필답형(2시간)

| 시험과목 | 출제기준(주요항목) |
|---------|---|
| 전기기기 실무 |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동기지, 정류기, 교류정류기, 제어기기 및 보호기기 |

라. 출제경향

필답형 시험이므로 시험과목, 출제기준 참고

5. 산업서비스

5-1. 부기(1-3급)

가. 검정기준

| 등급 | 검정기준 |
|----|--|
| 1급 | 대학졸업정도의 상업부기·공업부기·원가계산 및 회계학 기타 기업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대기업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2급 | 초보적인 원가계산을 포함한 고등학교졸업정도의 상업부기 및 공업부기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중소기업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3급 | 상업부기 원리·기장 및 결산(특수매매, 특수분개장, 분할원장, 회사회계를 제외한다)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소기업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나.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 검정방법 및 내용

| 등 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
| 1급 | 필기시험 | 상업부기, 공업부기, 원가계산, 회계학 |
| 2급 | 필기시험 | 상업부기, 공업부기 |
| 3급 | 필기시험 | 상업부기 |

II.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

1. 관광통역안내원

가. 응시자격

필기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나. 검정방법

- 외국어 듣기 시험
- 면접시험(외국어 면접 및 일반 면접)
- 필기시험

단,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검정과목

- 필기시험 : 국사(20%), 한국지리(10%), 관광법규(10%), 관광사업개론(10%),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중 1 과목 50%)
- 면접시험 :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시험면제사항

- 듣기 및 면접시험 면제 : 전년도 해당자격 시험의 외국어듣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시험전부 면제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 필기시험일부과목 면제(외국어만 응시)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조산사

가.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나. 검정방법

필기시험

다. 검정과목

조선학(마취학 포함), 신생아 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 모자보건법

라. 시험면제사항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방안 연구

발행일 2000년 2월 일 발행

발행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전화 : (02) 720-2422
738-7522

팩스 : (02) 3703-2378

인쇄처 진명인쇄공사

<비매품>